

- 역류 등록제도를 개선할 것.
- 안보군대와 법 집행 공직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할 것.

#### 절차와 기구

- 모든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게 책임자를 재판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배상을 받도록 할 빚을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법적 체계는 그러한 문제들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도 조사를 계속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요구를 해결하는 절차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희생자들의 필요를 존중하고 공정성과 정의의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 중대한 인권침해의 배상에 관련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재판적인 법령에 구애 받아서는 안된다. 그들은 신속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아무도 배상에의 요구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된다.
-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센터나 기구의 설립은 인권의 보호에 유용한 측면을 부가할 것이다. 그러한 센터나 기구는 진실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관련된 국가적 경험에 대한 정보, 법, 연구물, 기타 다른 자료들을 수집하고 경험을 교환하고 비교하며, 교훈을 얻으며 지식의 축적을 쌓도록 도와야 한다.

#### 6. 결론적 의견

과거의 인권유린에 대한 배상은 금전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권력남용과 범죄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에게 행해진 손상과 불의를 인정함을 함축한다. 배상은 또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이 명백히 설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배상은 보다 광범한 전략과 정치적, 사회적, 범죄적 정의의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한 정의는 비처벌에 반대하며 국제인권기구에 의해 재차 제시되었듯이, 진상조사와 범해진 범죄와 남용의 책임자들을 재판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배상은 정의를 실현하고 고통을 초래한 과오를 수정할 뿐만 아니라, 방지적 전략과 정책의 일부이다. 반복해서 국제인권기구는 배상의 방지적 측면과 방지할 의무와 배상할 의무간의 밀접한 연계를 강조해 왔다. 중대한 인권침해를 막을 목적의 정책을 고안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위로와 배상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본질적이다. 그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발생을 방지하므로써 사람들을 막대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의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더욱 본질적이다.

#### 종군위안부, 강제연행문제와 유엔

- 중대인권침해피해자 구제문제 해결방식의 제안 -

토츠카 에쓰로(Etsuro Totsuka)\*

#### 1. 머리말

1) 필자는 일본의 변호사로서 20년간 활동해 왔다. 일본의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그러나 종군위안부, 강제연행과 같은 중요한 인권문제에 관해서 잘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래동안 아무것도 해오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 초대받아 서울에서 강연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명예롭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1990년 6월, 일본 참의원 의원인 모토오카 쇼지씨가 이 문제를 취급했을 때, 일본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관여를 부정했다. 그래서 정대협의 강한 항의를 받고 일본에서도 종군위안부 문제는 큰 정치문제가 되었다.

1991년에는 한국에서 종군위안부의 생존자가 나타나고 증언함으로서, 대일본 제국군, 정부의 직접적 가해행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역사학자가 자료를 발굴하고 일본군의 관여를 증명하였고, 이것이 크게 보도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증거와 종군위안부를 연행한 행위를 고백한 가해자의 증언,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동작업으로 축적된 “강제연행진상조사단”的 조사결과가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 규명의 결과가 필자를 포함한 많은 일본인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은 이처럼 잔혹한 행위를 했는가’라고 반성을 하게 된 것이다. 다시 한번 사실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1992년 1월, 미야자와 수상은 한국국회에서 사죄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보상에 대해서는 일절 거부했다. 필자는 일본 정부는 모든 중대인권침해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 성실히 대응해야 하며, 일본인은 그것을 위해 최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동년 2월 유엔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2) 필자가 유엔의 NGO 국제교육개발/IED(International Educational Development Inc.) 동아시아 대표로서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주)

\* 일본변호사, 국제교육개발, 동아시아 대표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일본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며, 정의와 인도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밝혀진 사실에 기초한다면, 조선인 종군위안부 및 근로정신대를 비롯한 조선인 남녀에 대해 대일본제국이 행한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은 인도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조약의 위반이며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개개의 피해자가 일본에 대해 전상 규명, 책임의 승인, 위령비의 건립, 완전한 보상을 수반하는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상 당연한 권리이다. 개인배상청구권은 한국의 국가로서의 대일배상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다. 일본이 성실하게 이 요구에 응해야만 정의와 인도에 따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일본인의 자유, 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민족의 자유, 민권을 희생하여도 좋다’라는 사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1945년 포츠담선언 수락에 의하여 평화국가가 되는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신헌법의 제정만으로는 그 약속을 실시할 수 없다. 진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므로서, 무엇이 일본을 대한제국을 비롯한 아시아제국의 침략으로 몰아 세웠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다시 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닌가. 中坊公平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대일본제국 시대의 일본에서는 일본의 국익실현을 위해서는 타민족을 희생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이 당연했다고 생각한다. 명치시대 일본의 자유민권가가 조선병합을 정부에 요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인권에 국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필자는 이 생각에 찬성한다. 이러한 ‘일본인 지상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여성은 종군위안부로서 몸과 마음을 일본 병사에 바쳐서 당연하다’라는지, ‘조선인 남녀는 일본인보다 가혹한 강제노동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생긴 것이 아닐까. 비일본인도, 일본인과 꼭같이 동등한 고유의 ‘인권’이 있고,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위해서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과거 존재한 조선인 종군위안부, 조선인 남녀의 강제노동 피해자의 강제연행 등의 노예화 행위에 대해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일본인 지상주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현재의 일본인이 아직 ‘일본인 지상주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문제로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일본인 지상주의’와 결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이 문제들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은 양 민족의 우호 뿐만 아니라 튼튼한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2. 유엔에서의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의 심의

1) 필자는 1992년 2월 UN인권위원회에서 IED를 대표하여 종군위안부와 강제연

행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를 비판하며 유엔의 개입을 요구했다. 한국정부가 이 IED 발언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다. WAC(War Amputation of Canada), 전쟁포로 학대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성실한 개인 보상을 안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였다.

2) 1992년 5월, 유엔 인권소위원회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도 IED는 같은 발언을 했으며, 일본의 행위가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조약에 위반하는 노예로부터의 자유의 침해인 것을 강조했다. 또 나치스 독일의 인체실험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 보상에 관해서 유엔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실을 지적하고, 유엔의 NGO인 IAF(Internatioanl Abolitionist Federation)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IED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 결과 등 실무회의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보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중대침해 피해자의 배상, 보상 및 원상회복의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자’(반 보벤 교수)에게 제출하도록 유엔 사무국 총장에 요청하는 결의를 했다. 이것은 유엔이 인권문제로 일본에 대해 취한 역사상 처음의 행동이다.

3) 1992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IED는 전술의 국제법위반을 거듭 강조하여 ‘국제법 위반은 시효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정부가 조약에 의한 배상처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가령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조약이 있어도 그것은 不可讓의 인권을 소멸하는 것이 되어, 유스 코겐스(강행규범)에 위반되고 무효이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완전 배상해야 한다. 유엔이 중재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IAF, WCC, WAC, Liberation 등의 유엔의 NGO도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으나, IED의 발언은 이들 NGO에게 지지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정대협의 국제협력위원회 신혜수 위원장(8월 10일)과 전 종군위안부 황금주씨와 함께 정대협의 이효재 공동대표(8월 21일)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대표하여,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의 이상칠씨(8월 25일)가 Liberation을 대표하여 각각 발언한 것도 역사상 처음이었던 것이 아닐까.

인권소위원회는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와 똑같은 결의를 했다. 또 소위원회는 전술한 특별보고자에게 내년 8월까지 상기 주제에 관한 유엔 원칙, 지침안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종군위안부에 관한 정보취급은 등 특별보고자의 재량과 결정에 위임되어 있다.

## 3. 일본의 대응과 해결을 가로막는 장애

1) 1992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마음을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는가' 검토한다고 했으나, '법적 문제는 두고 서'하면서 '배상'도 '보상'도 거부했다. 소위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의 제시는 WCC대표(정대협), Liberation(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대표) 등의 NGO에 의해 명백히 비판, 거부당했다. 진상규명도, 책임의 승인도, 성실한 사죄도 없기 때문이다. 이 조치의 대상은 종군위안부 피해자에 국한되어 있다. 여자근로정신대를 비롯한 노예적 취급을 받은 강제연행 피해자, 연합국 포로로서 학대를 받은 전쟁 범죄 피해자, 그 이외의 중대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2) 1991년 12월,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의 피해자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장을 일본정부가 보상을 해야 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소송은 일본인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강하게 재촉하는 정치적인 효과를 올렸다는 점과 일본의 법적 책임의 근거로서 국제법상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지적한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 앞으로도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원고들의 비판은 계속될 것이며, 정치적 압력이 될 것이다.

'일본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의 구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필자는 직접적인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답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일반론을 말하겠다. 우선, 일본의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중요사건이면 최고재판소의 결론을 받을 때까지 20년 걸린다고 해도 부정하는 변호사는 적다. 그래서 실효적 구제라고는 말할 수 없다.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조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본 건의 중요 쟁점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의 재판소는 국제법에 익숙하지 못하다. 특히 국제인권법에 의해 피해자가 송소한 실례를 필자는 모른다. 더구나 일본인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외국인 피해자가 원고인 본 건에서 일본인 재판관이 '완전히 공평'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원고인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는 본 건의 해결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자 뿐만 아니다.

3) 일본의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전후보상법'과 같은 입법에 의해서 해결하자는 요청이 일본의 민간단체들로부터 국회의원에게 모아지고 있다. 일본 사회당은 10월 14일, 미야자와 수상에 대해 '전후보상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에 협력하도록 요구했다. 필자도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의한 해결에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자민당의 장기 일당지배체제는 선거에 의해서도 쉽게 변화할 것 같지

않다. 피해자구제를 주장하는 것은 야당이고 여당은 정부와 똑같은 자세이다. 둘째로 주요쟁점인 국제법은 여, 야당 모두 일본의 국회의원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분야이다. 셋째로 종군위안부 문제 이외에 다수국에 관련되는 많은 종류의 중대인권침해문제가 있고 극히 복잡하다. 국회에서는 일본 국민 사이에서 쉽게 합의를 얻기 힘든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본 건에서, 진상규명, 법적 책임의 승인, 보상금액 등 많은 곤란한 쟁점에 대해 조기에 국회의 합의가 얻어질 것이가. 놓여진 장애는 아주 클 것이다.

#### 4. 그렇다면 이상 검토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의한 구제 이외에 이것과 병행하여 진행할 '제4의 길'이 있는지가 문제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하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가를 해결 방식에 따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1) 시간이 없다.(피해자가 già 65세이다.)
- (2) 다수국에 걸친 피해가 있다.
- (3) 피해자의 수가 많고 전모가 밝혀지고 있지 않다. 생존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 (4) 문제는 국가간의 배상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간에서 해결을 못한다.  
(다만 공화국과의 교섭과 대만과의 관계에서는 국가간의 배상문제가 남아 있다.)
- (5) 피해자 개인으로부터의 청구이다.
- (6)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노예로부터의 자유의 침해, 강제노동조약위반, 기타 국제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다.
- (7) 유스 코겐스(강행규범)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다.
- (8) 피해자측은 진상규명, 책임 승인, 위령비 등 기념 사업, 교과서의 기재 등 교육·계몽에 의한 예방조치, 성의있는 사죄와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 (9) 피해의 종류가 많다.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전쟁포로 등 대일본제국군, 정부에 의한 피해로부터 일본군측에 속하는 군인, 군속의 은급 문제나 군표 등 재산문제까지 있어 피해의 정도, 법적 도의적 책임의 내용정도, 적용해야 할 법규, 국내법, 국제법이 다양하다.
- (10) 개별 피해의 입증도 곤란하다. 오래된 것과 증거인멸도 있다.
- (11) 방대한 피해이기도 하고 납제자의 부담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로서도 재판 소송권위가 있는 제 3자의 판단 내지 입법, 예산화 등의 국회 의결없이 재정적 지출을 못할 것이다.
- (12) 국민 사이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하지 않고 전쟁범죄를 일본 자신에 의한

추구, 처벌이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성이 없고 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없다.

### 5.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1) 1992년 8월 UN인권소위원회에서 IED, WCC, WAC, Liberation 등 NGO는 유엔에 의한 해결을 요구했다.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 하는가가 문제인데 유엔에 의한 의결은 상기 제문제에 충분히 대응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2) 필자는 일본정부가 유엔에 대해서 이하의 요청을 함으로써 유엔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피해자(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전쟁행위에 의해 중대인권침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으로서, 이러한 해결방식에 의한 구제를 원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일본에 관한 국제중대인권침해 재판소'의 재정에 따른다는 자)와 일본국간의 분쟁에 관해서 피해자로부터 제소가 있었던 경우는 제소사건에 관한 중재재판소로서 '일본에 관한 국제중대인권침해재판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일본은 동 국제중대인권침해재판소의 재정에 따른다는 것을 사전에 약속한다) 것부터 출발한다. 동 사무총장은 동 재판소를 창설하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일임받는다.

3)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무총장에 대해 일본정부는 이하와 같은 '일본문제 처리를 위한 국제중대인권침해재판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일본의 요청에 의해 이것을 설치한다.

②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은 사무총장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 의뢰하여 행한다. 동 소장은 상설 중재재판소의 재판관 명부에 계재되어 있는 자 중에서 10명의 후보자를 지명하여 사무총장이 그 중에서 5명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단 일본인 및 일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③ 재판수속은 동 재판소 재판관 회의가 결정한다.

④ 피해자는 동 재판소의 판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재판소에 대해 직접 구제 제소를 할 수 있다. 제소자는 제소 및 청문에 있어서 유엔 공용어가 아닌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빈곤한 피해자(직접 피해를 받은 자 및 그 가족)는 재판소의 부조에 의해 변호사의 원조, 대리를 받을 수 있고 청문의 기회를 보증한다. 재판소는 순회하고, 필요한 장소에서 법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⑤ 재판소는 검증, 증인심문, 기타의 증거조사를 필요한 장소에 출장하고 할 수 있다. 동 재판소는 공개 심리를 하고 신속한 공개판결을 언도한다.

⑥ 재판소는 재판의 기준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8조의 '裁判基準' 및 '公平과 善'에 비추어서 판결한다.(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법적 책임이 없어도 형평과 선의 관점에서 보상 등이 필요하면 그렇게). 판결서에는 인정 사

실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판결에서는 국제법 위반의 중대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을 인정할 때 또는 형평과 선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사죄, 기념사업, 금전보상, 기타 배상,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일본정부에 대해 명령할 수 있다.

⑦ 재판소는 당사자의 제소, 또는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동 이사회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 의견을 요구하도록 요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재판소의 판결은 양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⑨ 사무총장은 재판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특별경비로서 지출하는 것 외에 동 재판소 사무국 설치 등 모든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전 비용은 일본정부가 부담한다. 피해자는 허위의 제소, 기타 여기에 준하는 악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제소가 아닌 한 제소인이 패소해도 소송비용의 부담은 요구하지 않는다.

⑩ 출소기간에는 기한을 두지 않지만 재판소가 발족한 후 약 3년 이내를 시험케이스로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대다수 종류의 사건에 대한 해결방식을 확립하고, 그 후 3년 이내에 대부분의 사건의 처리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동 재판소의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비용으로서 최소한도 60억엔 정도의 지출을 생각한다.

4) 이러한 재판소는 현재 없다. 이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이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① 제도의 본질은 중재제도이며 국제법상도 국내법상도 옛날부터 인정되고 있다. 중재제도가 가동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제 3자인 중재재판관의 재정에 따른다고 합의해 성립된다. 이러한 국제중재재판소가 생긴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일본의 재판소를 이용해도 좋다. 또 일본국회에 청원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는 것도 자유이다. 피해자는 구제를 위해 더 우수한 쪽을 택할 것이다. 일본 국내법의 쟁점이 문제가 될 때에는 국내 구제수속을 다하고 그 위에서 국제적 구제기구에 구제를 요구하게 되지만, 본 건에서는 국제법상의 제문제가 주요쟁점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 구제수속을 다할 필요는 없다. 희망한다면 직접 국제수속으로 구제제소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재판소 수속에 사용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다. 희망한다면 직접 국제수속으로 구제제소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재판소 수속에 사용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직 생존중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성이 높아질 것이다.

② 유엔헌장 33조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중재수속 등의 평화적 해결 수단을 이용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국가간의 중재수속의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국간 조약에 의해 상설 중재재판소까지도 설치되어 있다. 국제투자의 해결을 위한 국가와 사적 법인격 밖에 갖지 않는 기업과의 사이에서 일어나

는 분쟁을 취급하는 상설중재기간이 기능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하고 싶다.

③ 구주(歐洲)인권재판소, 미주(美洲)인권재판소, 국제인권규약위원회 등 피해자 개인으로부터의 재소를 받는 국제인권기구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고, 개인의 국제법상의 지위는 확고히 되어 오고 있다. 최근, 이라크 보상문제유엔위원회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필자의 안보다 더 철저한 보상조치가 실현되고 있다. 이미 국제형사재판소까지 제안되고 있다. 현재 유엔 인권기구의 검토시기이며, 1993년 6월에는 유엔세계인권회의가 예정되고 있으며, 대담하게 보이는 제안도 결코 당돌한 발상이라고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전기 특별보고자 반 보벤 교수의 보고서에도 국제인권재판소의 제안이 있는 것 등을 미루어 보아 이 기구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

④ '옛날이면 물라도 현대는 일본정부가 요청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러 유엔 인권전문관들도 시사하고 있으며 유력 유엔NGO가 이러한 구제기관의 설치를 유엔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 이외에도 모든 당사자가 납득하고 신속, 정확하게 전면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5) 최대의 문제는 일본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 가이다. 좋은 해결안도 일본 정부가 거부하면 실현할 수 없다. 앞으로 일본을 포함한 관계 각국의 민간단체, 정당, 정부 등이 이 제안을 지지하는가 어떤가에 의해 일본 정부의 태도가 정해질 것이다.

필자는 일본 정부는 스스로 유엔에 이러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도(조약비준에 필요한 것과 동등한) 결의를 해야 한다. 일본 국민도 이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지출을 하는 것을 찬성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개개의 구체적 해결에 대해 하나 하나 상세한 합의를 피해자측과 교섭하거나 오래동안 국내재판소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일본의 국회와 정부가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법기관이 '법적 책임이 있다' 또는 '형평과 선의 관점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여기에 따른다는 해결 방식에 합의하는가 어떤가 만을 결단하면 좋다.

정부는 '일본에 국제법상 책임이 있다', '형평과 선의 관점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국제기관이 판단해도 아직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인가. 그것이 근본 문제이고 이 점만 충분히 의논하면 좋다. 그러나 지불능력의 점에서 '년간 1조엔 밖에 지출할 수 없다' 등의 재정적인 배려를 하면 좋다. 금액이 년 1조엔을 넘을 경우는 연기해서 연부식으로 이행해도 좋다고 해야만 현실적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점에서 상기의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다. 일본은 '국제법에는 따르고 인도적인 책임도 진다'고 말해야만 성의있는 태도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곤란한 문제를 전면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평가도 높아질 것이다. '고활하다, 잔혹하다'라는 일본 이미지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휴머니티, 인간의 존엄과 원칙에 맞는 해결방식이라고 생각한다.

## 강제종군위안부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이 장희 \*

### I. 문제제기

제 2차 세계대전시 일본에 의한 종군위안부의 인권침해행위는 국제군사재판소 규정(1945) 제 6조(c) 人道에 반하는 범죄(Crime against Humanity), 육전협약(1907)의 前文의 위반, 일본이 1932년에 비준한 강제노동규약(Forced Labor Convention, 1930)위반 그리고 국제관습법인 노예로부터 자유(Freedom from Slavery)의 침해임이 국내외 국제법학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종군위안부 문제를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1992년 1월 13일에 와서야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국가기관의 관여를 뒤늦게 인정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과 1910년 한·일 합방조약의 유효성을 고집하며, 또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부속문서인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그리고 최근 1993년 6월 Wien 세계인권대회에서는 UN의 인권 관련기관이 종군위안부와 같은 인권침해의 과거문제를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로비를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해 펼쳤다고 한다. 더군다나 UN 인권소위원회의 제 4의 특별보고자인 반 보벤 교수가 종군위안부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그의 의무이탈임을 항의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등 한국민간측은 첫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민사적 책임에 대한 것이었고, 국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국제법상 조약종료사유인 사정변경원칙에 의거, 1965년 조약으로 종군위안부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다. 셋째, 종군위안부 인권침해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조건인 국가기관의 행위, 직무상의 행위, 고의 및 과실이 있을 것, 국제법 위반행위,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넷째, 일본정부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유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조약은 1963년 UN국제법위원회가 국가대표

주)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국제법) 교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률전문위원

개인에게 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무효라고 한 점 등을 들어 종군위안부 인권 침해는 국제범죄행위이며, 일본의 국가적 책임과 그에 따른 책임추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민간측은 철저한 진상규명, 범죄자 처벌, 사죄 및 배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양 틈바구니에서 한국 정부측은 최근 일본에게 정부차원에서 경제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표명에 따라 현재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촛점은 정확한 진상조사,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책임인정, 법적 책임추궁(배상문제, 진상, 전범자 처벌문제 포함)의 순서를 끝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이 진상규명에도 소극적이고, 또 종군위안부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도 부인함에 따라, 제 1차적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일본이 종군위안부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승인케 하느냐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국내적, 한·일 당사국간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접근으로 대별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 일본 국내법 및 당사국간의 접근에는 일본 현행 국내법,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등 일정한 한계를 지녔다. 더구나 인권보호는 그 본질상 국제적 보호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본고의 촛점은 위의 2가지 해결방법의 한계성과 종군위안부 인권침해의 국제범죄성을 전제하면서 일본정부로 하여금 국제법적 책임 인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데 있다. 이 방안으로 객관성있는 UN의 기관에 의한 판정 내지는 법적 유권해석이라는 조치가 국제여론의 강한 지지를 얻게 되고, 이는 일본정부를 강제하는데 용이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케 하는데 국제적 차원에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를 일별하고 그 방안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II. UN 인권위원회에서 해결 방안

### 1.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종군위안부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된 UN 헌장하의 관련 주요기구는 헌장 제68조에 근거한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보조기구인 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이다. 인권위원회는 현재 45개국의 국가대표로 구성된다. 각국 대표들은 개인자격이 아닌 국가의 대표로서 정부의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한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국제적 증진을 위한 조치들, 소수집단의 보호와 차별대우 금지 등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제안이나 견의 또는 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UN기구 안에서 인권에 관한 경제사회이사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인권증진을 위한 여러 UN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인권위반 사례를 다루는 국제절차와 제도를 개발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인권전문가가 아닌 국가대표로 구성되었을 뿐더러, 또 이 대표들이 국가의 이해만을 대표하는 관계로 비능률적이고, UN 인권 프로그램을 정치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1947년에 인권위원회의 한 부속기관으로서,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소 위원회(the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이하 인권 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소위원회는 인권심의위원회들과는 달리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선출되어 어느 정도 출신국가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이 업무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인권보호라는 대의명분에 가장 열성적인 관심을 가진 UN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소위원회는 현재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정신대문제와 UN 인권소위원회

한국정신대책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대표 4명이 종군위안부문제를 제기한 곳은 바로 UN 인권소위원회였다. 정대협은 1992년 5월 4-13일 개최된 UN 인권소위원회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에 정신대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1992년 8월 9일에서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의 인권소위원회에서는 종군위안부 인권침해문제를 공식으로 의제로서 상정했다.

인권소위원회가 다루는 20개 의제 중에서 정신대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관련의제는 의제 16: "현대형 노예제(Contemporary forms of Slavery)"와 의제 4 "중대한 인권침해 희생자에 대한 배상(Compensation to the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이었다. 의제 16을 위해서 소위원회 전문위원 26명 중 5명으로 현대형 노예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이 따로 구성되었다. 의제 4인 희생자 배상문제를 위해서는 인권소위가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네델란드 국제법학자인 반 보벤 교수를 1989년에 배상문제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1990년에 첫보고서, 1991년 두번째 보고서, 1992년 8월 3번째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1994년에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에서 그가 정신대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앞으로 배상문제 해결에 큰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현재 정신대문제는 UN의 인권소위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며, 국제적으로 그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 의제 4의 특별보고자인 반 보벤 교수도 한국정신대 문제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 3. 해결방안

인권위원회에서의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2 가지 측면에서 그 장단점이 있다. 우선 UN 인권소위원회 현대형노예제실무회의에서 비정부간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를 통한 의견제시 및 자료제공은 UN의 인권관련기구에서 종군위안부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이해증진 및 강한 국제적 지지와 여론을 불러 일으켜 일본정부에 큰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큰 장점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노력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국제문제화 시킴으로써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과의 연대적 협력도 가능케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번 5월 GENEVA에서의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에서 이제까지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던 일본정부가 종전과 달리 상당히 체계적이고 법적인 공식적 답변을 한데서 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인권소위 및 실무그룹(working group)에서 정신대문제에 대한 유리한 해결방안을 결의, 경제사회이사회나 일본에 건의하도록 하는데는 인권소위와 실무회의가 속하고 있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가 그 회원이므로 해당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 일정한 한계가 예상된다. 심지어 지난 5월 GEVEVA에서 열린 현대형노예제 실무그룹조차도 일본의 강한 로비가 작용했었다. 하물며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가 일본의 강한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설정과 개발은 할 수 있으나, 특정국가의 과거 인권문제를 다루기에는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종전의 정치화 경향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 해결인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문채택 같은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1950년 초 경제사회이사회와 같은 UN인권 관련기관이 공식적으로 나치하에서 인간 실험으로 희생된 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하도록 독일에 권고 결의한 예를 볼 때 (독일은 UN의 조사에도 협력하고 UN의 제안을 수락했다), 인권위원회에서의 정신 대문제 해결노력은 국제여론지지를 통한 기반조성에는 도움이 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 UN은 일본군인들의 성적노예로 희생된 아시아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권고결의를 내놓지 않은 바, 이러한 UN의 태도는 유럽 여성과 아시아여성간의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 III.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적고적 의견 (advisory opinion) 유도

ICJ에서의 법적 문제해결은 2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ICJ에 제소하여 판결을 통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ICJ에 법적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여 ICJ의 법적 유권해석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소송제기 자격은 국가(States)이

다. 그런데 현재 한·일정부는 정신대문제를 ICJ에 제소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의도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은 ICJ규정 제36조 2항(선택조항:optional clause)을 수락하고 있지만, 한국은 수락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ICJ 규정 제36조 2항의 강제관할권의 효력은 그것을 수락하는 국가 상호간에만 생긴다. 그래서 설사 한국이 ICJ에 제소하더라도 일본이 동의해야 ICJ에 의한 강제 재판관할권이 성립된다.

그래서 후자의 방법이 있는데, UN헌장 제96조 제1항은『총회 또는 안보리는 여하한 법률문제에 관하여서도 권고적 의견을 주도록 ICJ에 요청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조 제 2항에서『UN의 기타기관 및 전문기관으로서 언제든지 총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는 것은 그 활동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정신대문제 해결과 관련, 경제사회이사회가 총회의 허락을 받아 ICJ에 정신대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수 있다.

그러나 상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대표로 구성된 인권위원회가 일본의 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과연 특정국가의 인권침해문제를 경제사회이사회에 건의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ILO가 UN총회의 허락을 받아 정신대문제에 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대안은 첫째, ILO가 UN 전문기관으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뿐더러, 정신대문제는 강제노동행위에 해당하는 ILO 협정에 관련된 권한내 문제라는 점, 둘째, ILO 기관의 성격이 타 UN 기관에 비해 비교적 국가의 입김이 약하고 진보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 셋째, 일본의 노동조합(National Union of local government workers : Gichiro)이 최근 정신대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일본정부에 요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실현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비록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사법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유권해석으로서 판결 못지 않게 정치적 도덕적으로 일본정부를 움직이는데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V. 아시아 지역 전범재판소의 설치

지난 6월 Wien 세계인권대회에서 인권침해를 철저히 응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형사법정의 설치가 제기됐다. 또 유고에서 일어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및 전범처벌을 위해 UN안보리는 1993년 2월에 구 유고지역에 전범재판소 설치를 결의했다. 이와 같이 국제기관에서 인권의 범죄행위 처벌을 위해 국제적, 지역적 형사법정을 설치하는 것은 세계적 여론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러나 한국 종군

위안부 인권침해 행위는 명백히 국제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여성에 대한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1945년 동경 군사법정에서 처벌되지 않았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 35명의 유럽여성을 성적 노예희생자로 삼은 전범장교가 네델란드 군사법정에 의해 처벌된 것과 대조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2차 대전중 아시아 여성들을 성적 노예화한 일본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해 피해자 개인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아시아지역 전범재판소 설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V. 국제 심사위원회 및 국제조정위원회 설치

### 1. 국제심사와 국제조정의 의미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의 분류에는 크게 1) 정치적·외교적 수단 2) 국제기구 3) 재판 등의 3가지 수단이 있다. 여기서 조정과 심사는 외교적 수단 다섯가지 즉, 직접교섭(negotiation), 주선(good office), 중개(mediation), 심사(inquiry), 조정(conciliation)에 속한다. 직접교섭은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당사국간의 직접적인 외교교섭을 말하는데, 분쟁해결방식으로서는 보통 제1차적으로 예정되는 것이다. 주선과 중개는 제3국이 분쟁당사국간에 개입하는 점에는 동일 하나, 양자는 그 개입의 정도에 의해 구별된다. 즉, 주선은 제3국이 분쟁의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외교교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조력하는 것이다.

심사와 조정은 개입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고, 심사위원회나 조정위원회와 같은 독립의 국제기관이 분쟁에 개입하는 분쟁해결방식이다. 심사는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조약』에 의하여 최초로 설정된 것이며, 조정은 이것이 한층 발전하여 성립된 제도이다.

우선 심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명예 또는 중대이익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에 다투어지고 있는 사실문제를 명백히 하는 절차를 말한다(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조약 제9조). 심사는 원래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국제심사위원회가 국가책임의 유무를 판단하는 등 중재재판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심사가 단순히 사실문제의 보고에 그치는 것인데 반해, 조정은 국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의 사실을 심사하는 동시에 그 해결조건까지도 제시함으로써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이 국제조정은 심사와 중개의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절차이다. 조정에 관한 조약은 2국간의 조약인 경우가 많으나 다국간의 조약인 경우도 있고, 조정만을 약속한 조정조약 이외에 재판과 조정을 결부시킨 재판조정조약도 있다. 1928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정서』(1949

년 UN에서 개정)는 대표적인 제판 조정조약으로서 중재제판 및 사법적 해결과 국제조정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기도한 것이다.

### 2. 종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심사와 조정위원회 설치

종군위안부문제에 가장 큰 장애는 진상규명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이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국제심사위원회 설치에 합의한다면, 상호의 많은 오해가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독립된 조정위원회가 단순한 사실규명 외에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국제조정위원회 설치로 발전하는데에 합의한다면 더욱 이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 심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설치는 양국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종군위안부 인권침해의 방치는 한일양국의 국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유익하지 않다. 그러므로 일본이 소극적이면, 한국정부라도 법적 해결이 아닌 이러한 외교적 해결수단인 국제심사 및 조정위원회 설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VI. 일본의 UN상임이사국 가입과의 연계

주지하다시피 경제적으로 세계 제2위인 일본은 이에 걸맞게 국제정치적 대국을 강하게 노리고 있다. 그 예가 UN상임이사국 가입이다. 이미 UN사무총장 부로투스 갈리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가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선진대국으로 행세하려면 최소한 2차대전 중 한국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한 인간성 파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인정과 그에 상응한 구제책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과거역사에 대한 법적 사죄없는 전범국가 일본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맡을 수가 없으며, 따라서 상임이사국 자격은 거부되어야 한다.

상임이사국의 가입은 UN헌장 제23조의 개정을 요한다. UN 헌장개정은 총회 구성원의 3분의 2의 다수로서 채택되고, 또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UN 가맹국의 3분의 2에 의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될 때, 모든 UN 가맹국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헌장 제107조).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일본의 상임이사국 가입을 저지하려면,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이 반대 투표하게하거나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현재 프랑스와 영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하고 있음을 고려, 상임이사국을 상대로 종군위안부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VII. 남북한/ 타국가/ 국제 NGO와의 긴밀한 연대

종군위안부의 중대한 인권침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및 국제공동체의 공동관심사이다. 그래서인지 국제무대에서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주장을 반박하는데 남북한의 연대의식은 대단했다. 최근 1993년 6월 14일 25일 Wien 세계인권대회와 관련, UN인권소위에서 일본이 인권소위 구성원 의사와는 달리 과거 종군위안부 인권침해문제를 배제시킬 속셈으로 여성관련 마지막 공식문서 채택에서 “All violations of this kind, including in particular murder,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forced pregnancy, require a particularly effective response”라는 원래의 문귀를 “Current violations of this kind, including in particular murder,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forced pregnancy, require a particularly effective response”로 변경시키고자 했다. 이에 북한대표를 비롯 중국, 콜롬비아, 파키스탄, 한국, 우루과이 등 6개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의 행위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 다시 “Current violations”을 “All violations”으로 원래대로 하게 함으로써 종군위안부문제를 인권소위에서 계속 의제로서 채택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많은 국제 NGO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종군위안부해결은 우리와 같은 정신대피해문제를 가진 북한, 대만, 필리핀 등의 아시아국가와의 연대는 물론, 영향력 있는 국제 NGO와의 긴밀한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VIII. 결론

본 고는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에도 비협조적이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법적 책임인정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으로 하여금 종군위안부 인권침해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조약상의 민사책임과는 별개로 국제범죄행위이며, 일본의 국가책임성립이라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실효성은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공동체 구성원인 주권국가의 자발적 협조에 많이 좌우된다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는 길은 강한 국제여론에 호소해 국제법 위반국에게 압력을 과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은 종군위안부 인권을 침해한 일본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UN 인권 관련기관에서 계속적인 문제제기는 국제여론 환기라는 관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이와 동시에 독립된 국제기관에서 객관성 있는 법적 유권해석 유도로 국제여론을 움직이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말없이 승복시키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 종군위안부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UN 인권심의위 및 인권소위가 소속된 경제사회이사회가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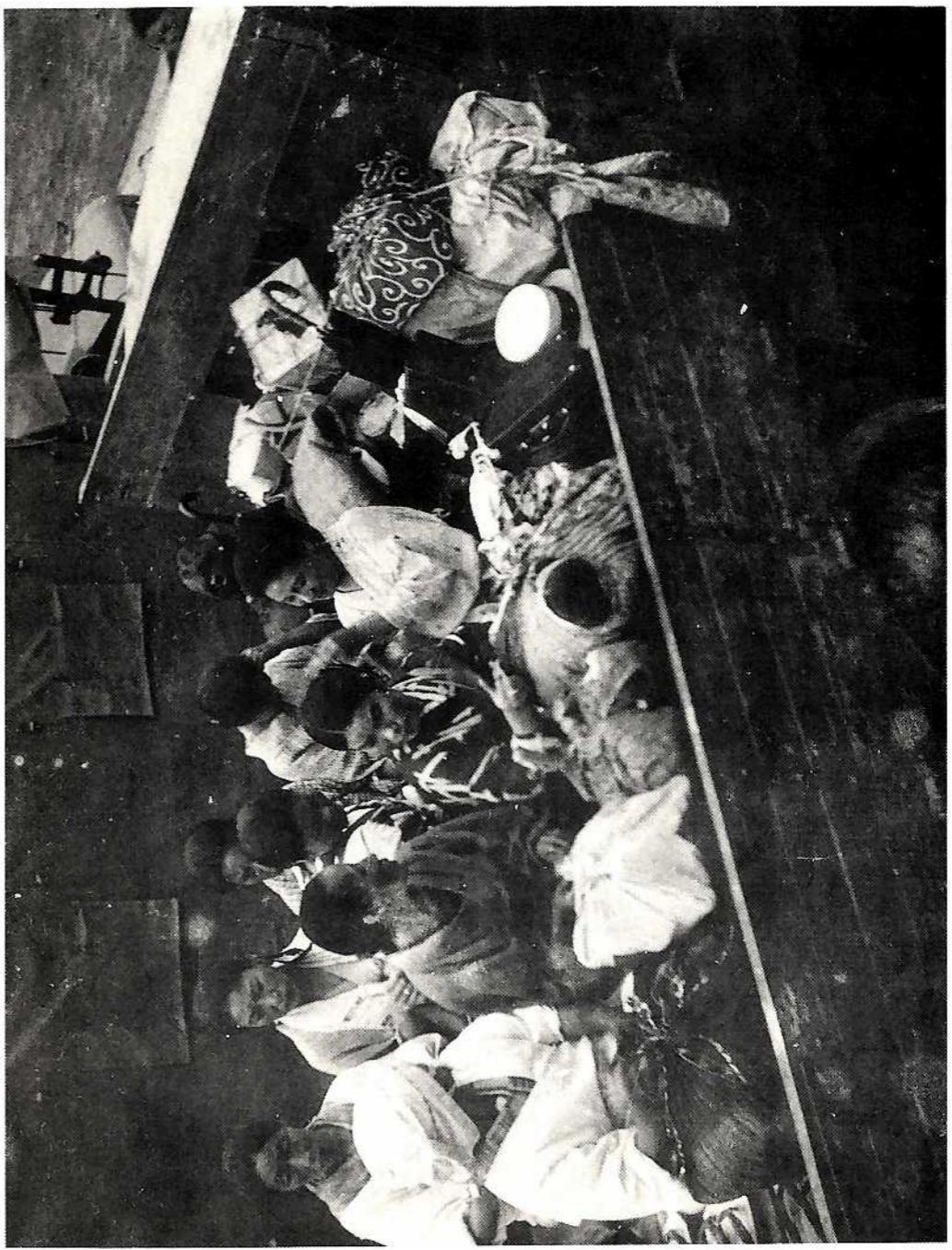
나, 이 이사회의 대표들은 정부대표이기 때문에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한 로비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위에서 검토된 국제적 해결방안 가운데 ILO를 통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osary opinion)의 유도가 현재 가장 효과적인 현실적 방안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우리는 아시아지역 전범재판소, 국제 심사위원회 및 국제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같은 정신대 피해국가인 북한, 대만,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국가와 영향력 있는 국제 NGO와의 긴밀한 연대를 강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가입과 연계시켜,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도 일본의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일본의 국가책임을 적극적으로 왜 묻지 않고 있는가?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 민족적으로 중대한 식민역사 청산인 종군위안부 인권침해문제가 한국의 정대협과 몇몇 민간단체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국제 NGO에 의해 그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을 따름이다.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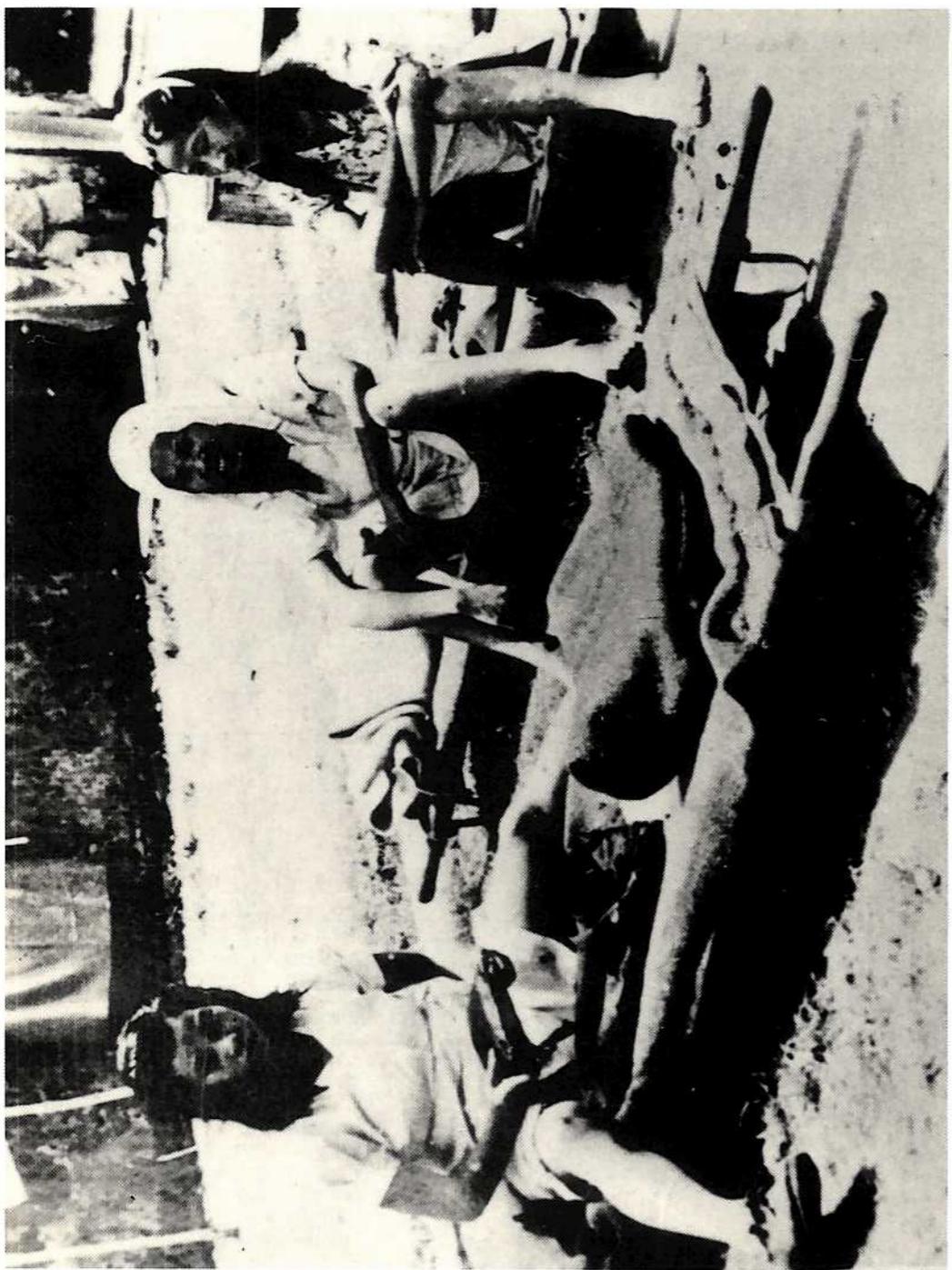
- 기록사진
- 활동일지
- 주요성명서 및 서한
- 신문보도자료

1978년 11월  
[지금은]  
1978년 11월  
[지금은]  
1978년 11월  
[지금은]

정신대 관련  
사진자료







버마지역에 있던 위안소



버마지역에 있던 위안소-일본군은 점령지의 현지 여성들을 일본군을 위한 위안부로 강제동원하기도 했다.



일본은 패전할 때 조선인 위안부들을 전쟁터에 버리고 갔다.





버려진 조선여자들은 미군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미군에게 심문받고 있는 조선인 위안부들(전쟁이 끝나고 베마에서 미군의 포로가 된 조선인 위안부들은 미군에게 심문을 받게 된다. 그 심문내용은 현재 미국 워싱턴 도서관에 자료로 보관되어 있다.) ■



중국 운남성 일대에서 찍은 사진





## 정신대문제 활동일지 (1992년 9월 1일 - 1993년 8월 30일)

- 1992. 10. 17 추모제 행사 “정신대아리랑”
- 1992. 12. 1 정신대할머니생활기금 국민운동본부 발족
- 1992. 12. 11-12 유엔인권소위원회 배상문제 특별보고관 반보벤 초청세미나 및 조사활동 실시
- 1992. 12. 23 정신대만행진상규명촉구 범시민대회
- 제 50차 수요정기시위
- 1993. 2. 4-10 아시아연대활동으로 필리핀, 대만 정신대책협의회 순방하여 아시아지역의 정신대문제 실태와 대책활동 상황교환
- 1993. 2. 14-28 유엔 인권위원회 참석
- 1993. 3. 1 일본의 전쟁범죄 진상규명과 군국주의 부활저지를 위한 3.1 국제연대집회
- 1993. 3. 13 김영삼대통령 “일본정부에게 물질적 보상요구 않겠다.” 발언
- 1993. 3. 15 3.13 발언에 대한 항의질의서 발표
- 1993. 3. 25-29 6월 비엔나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방콕 아시아지역준비회의 참석
- 1993. 3. 2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특별위원회로 법률전문위원회 구성
- 1993. 4. 3 종군위안부 피해자인 최정례(66세) 뇌출혈로 사망
- 1993. 4. 3-25 놀리페 한두레 “소리없는 만가” 공연
- 1993. 4. 9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 증언청취 한국방문계획에 대한 우리입장” 성명서 발표
- 1993. 4. 21-27 나눔의 집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 서화전  
(나눔의집건립추진위원회 개최)
- 1993. 4. 23-29 정신대문제를 주제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동경토론회
- 1993. 4. 27-5. 2 국제법률가협회(ICJ) 변호사 2인 방한, 강제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조사활동실시
- 1993. 5. 22 정신대할머니생활기금모금국민운동본부 거리문화한마당
- 1993. 5. 22-29 유엔 인권소위원회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 참석
- 1993. 6. 9-23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참석
- 15일, “Global Tribunal on Violations of Women's Human Rights” 집회에 참석하여 증언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폭로
- 17일, 필리핀 Asian Women Human Rights Council과 공동으로 “일본군의 성노예에 관한 아시아 여성포럼” 개최
- 1993. 6. 28 일본 무또가분 외상방한에 즈음하여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993. 6. 29	줄속한 외교적 태협을 경계한다" 성명서 발표 일 외상 방한에 대해 한국정부에 바라는 우리의 입장 외무부장관께 서신으로 발송 일본 무도가분 외상 방한
1993. 7. 5	일본 마이니찌신문 오보기사에 대한 항의문 발표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공청회 개최
1993. 7. 15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가입을 반대하는 아시아연대성명서 발표
1993. 7. 24	"일본정부의 중언청취 반대한다"는 정대협 입장 성명서 발표
1993. 7. 26	정신대 할머니생활기금모금국민운동본부 할머니들께 모금 전달 정신대 할머니 20명이 "일본정부 중언청취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발표
1993. 7. 26-28	일본정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협력하에 정신대피해자 중언청취
1993. 7. 29	일본전쟁책임자료센타 아라이 심이찌 대표 방한 기자회견 - 일본정부의 중언청취에 대한 일본전쟁책임자료센타의 입장과 강제성입증가능한 자료 및 새로운 자료 발굴에 대한 설명
1993. 8. 4	일본정부 군위안부에 관한 2차 보고서 발표 2차 보고서에 대한 정대협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1993. 8. 9	일본정부 2차 보고서 발표에 대한 한국정부의 "현안과제로서의 종결"이라는 입장에 대한 질의서 발송
1993. 8. 9-10	일본 동경에서 종군위안부 문제 한·일 합동연구회 개최
1993. 8. 11	48주년 8.15기념 전범국 일본규탄 집회실시
1993. 8. 2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특별위원회로 전상규명위원회 구성

주요성명서 및 서한  
(1992년 9월 1일 - 1993년 8월 30일)

UN인권위 49차 회의에 제출된  
국제조정협회(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의 성명서

1. 국제조정협회는 지난 해(1992년)의 마지막 인권소위원회 이후 한국의 정대협이 일본정부에 제시한 요구들을 지지해 왔다. 우리는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소위가 인권위원회에 제안한 행동결정초안을 높이 평가하고 확고히 지지한다. 우리는 인권위원회가 아래의 몇가지를 적절하게 고려하기를 기대한다.

2. 일본정부 대표들은(본 위원회에 참가한) 비정부기관들의 비판에 대하여 이전과 똑같이 답변했다. 즉 일본수상이 1992년 1월에 한국에서 사과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 사과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래의 두가지 점에서 그 것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다.

첫째로, 일본은 성적 노예상태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종군위안부는 일본군인을 위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일본황군과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지속적인 대규모 강간의 추악한 형태였다. 협회는 희생자들이 강제로 끌려간게 아니라면 왜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이 사과했는지 일본정부에 묻고 싶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미야자와 수상이 사과할 필요는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확보한 다양한 정보에 근거하면, 한국의 여성 희생자들은 성적 노예상태로 강제로 끌려갔고 결코 자원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로, 일본정부는 토쿄지방법원에서 한국인 생존자들에게 정신대가 당시의 일본법률에 저촉됨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는 두번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우리 생각에는 먼저 일본 정부가 당시의 국제법에 정신대가 적법한지를 입증해야 한다. 비록 일본 법률이 합법적이라고 했을지라도 정신대 희생자들의 노예화는 국제법을 어기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점은 뉴햄베르크와 극동군사재판에서 확인된 중요한 원칙이다.

정신대가 일본법률에 적법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다. 일본의 강점기(즉 1905년 이후)에 한반도에 적용된 일본의 법률 전체가 국제법상 무효라고 우리는 믿는다.

4. 이 점이 일본의 법률가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 한국은 1905년까지 주권국가였다. 일본은 그 때 보호조약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고 대한 제국은 피보호국이 되라는 일본제국의 요구에 저항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자면 경과는 이렇다. “일본은 보호조약을 조인시키기 위해 원로 정객인 이토 히로부미를 보냈다. 이토는 일본군의 경호를 받으며 왕궁에 들어가 고종과 그의 신하들에게 일본이 준비한 조약 초안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관리들이 반대하자 가장 강력한 반대를 표시한 한규설을 일본 군인들이 방에서 밖으로 끌어냈다. 일본군인들은 외무부로 가서 관인을 가져왔다. 1905년 11월 17일에 일본인의 손에 의해 문서에 관인이 찍어졌다.”(C. J. Ecker emd KOREA OLD AND NEW, A HISTORY, 1990, 하바드 대학 출판부, P. 239.) 그 다음에 조약은 한국의 외무대신에 의해 서명되었고 양국 황제의 비준은 받지 않았다.

조약은 5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의 주권과 독립을 완전히 박탈하고 일본천황에 의해 임명된 통감을 한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만드는 내용이었다. 조약 제 1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토쿄의 외무성을 통하여, 차후로 한국의 대외관계와 문제를 지도 감독한다...” 제 2조는 한국이 “일본정부를 통하여 않고는 어떤 국제적 성격의 조약이나 협약”을 맺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제 3조에 따르면 “서울에 주재하면서 주로 외교문제를 책임지고 지도하는 통감은 한국황실에서 일본정부를 대표한다.”

이후 고종의 필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서방 나라들이나 국제사회의 도움을 구하려는 시도는 모두 무시되고 실패했다. 이 조약으로 인해 고종의 각료회의와 결정도 초대 통감인 이토에 의해 지배되었다. 통감은 1907년에 고종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에게 양위하도록 강요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이 조약은 무효라고 믿는다.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보고서(1963년 2부 P. 197)에 따르면 “조약의 서명이나 비준, 수용이나 승인을 얻기 위해 개인의 신체나 신체적 능력에 강제나 위협이 가해지면 국가가 조약을 무효화시키는게 정당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다.” 관습적 국제법에 대한 이런 진술은 19세기 이후 국제법학자들에 의해 널리 지지되어 왔다. 실제로 조약법 제 51조는 뒤에 개인들을 강제해서 얻어진 조약에의 동의는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 제 51조는 이렇다. “한 국가의 조약에 대한 동의가 그 국가의 대표를 행동이나 위협으로 강제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면 법률적 효력이 없다.” 게다가 ILC는 일본의 한국보호조약을 강제성으로 인해 조약이 무효화되는 역사적인 사례 4가지 중 하나로 들었다.

따라서 일본을 포함하는 그 어느 누구도 1905년의 보호조약이 무효였다는 것에 반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식민지통치와 그 후 한국에 적용된 일본 제3법률의 정당성은 보호조약과 1901년의 또 다른 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뒤의 조약에 의해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었다. 일본에 의해 최초로 시행된 일본법률은 보호조약에 기초해 한국에 통감체계를 세우기 위해 일본천황이 1905년에 선포한 칙령인 것 같다.

1910년의 조약 당시 통감에 의해 지도되는 외부대신과 일본제국을 대표하는 동일한 통감사이에 체결되었다. 일본과 한국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통감이라는 동일한 인물이 1910년 조약을 체결했다. 자신과 자기제국의 주권과 독립을 일본에게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고종황제는 그 조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제법적으로 말하자면, 1905년 조약이 실제로는 무효이므로 그의 주권은 합법적으로 존재해왔다. 통감의 근거가 되는 1905년 조약이 무효이므로 국제법상으로 보자면 통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1905년의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사실상의 지배권력(통감)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1910년의 조약은 불법이고 무효이다.

이렇게 본다면 1905년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유엔에 그 권력을 넘긴 1945년 8월까지의 일본식민통치의 법적기초는 없었다. 따라서 국제법상으로는, 일본이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강제한 일본 법률과 규칙들은 어떤 법적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 당시 일본법률에 따라 군복무를 포함하는 어떤 일이나 봉사에 한국 남자나 여자를 징발하는 것은 불법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인 정신대와 강제노역에 희생된 한국인 남녀가 합법적으로 징발되었다는 주장을 일본은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을 노예화한 것이 국제법상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일본은 입증해야만 한다.

5. 일본은 한국인 희생자들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 사실과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확인에 기초해 희생자 모두에게 완전한 배상을 해야만 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인권소위원회와 그 산하 ‘현대형 노예제의 형태에 관한 실무그룹’이 작성한 초안을 인권위원회가 승인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유엔의 모든 인권기구들이 전대미문의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행동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1993년 5월 17일

##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3월 13일자 지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김영삼 대통령은 13일 종군위안부문제와 관련,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종군위안부보상은 내년부터 정부예산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정부는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한일조약으로 전후처리는 해결되었다. 위안부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다”라는 입장을 김영삼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과거 노태우정권이 ‘선 진상규명 요구와 후배상제기 검토’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으로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발언에서 물질적 보상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다.

1. 종군위안부 문제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범죄로서 국제법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제법에 의한 개인 피해자의 배상요구권은 국가와 상관없이 유효하며, 국가는 자국민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3일 김대통령의 지시는 이러한 권리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2.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일본의 범죄성이 명백해진 시점에서도, 일본정부에 대해 ‘물질적 보상’ 또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는 한일협정과 상관없이도 중대인권침해에 대한 전쟁범죄로서 한국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3.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이 언론에 발표된대로 일본에 대신한 ‘보상’인 것인지? 아니면 민족수난의 희생자에 대한 동포적 차원의 위로와 생활지원인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전자일 경우, 너무나 터무니 없는 발상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4. 한국정부는 진상규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13일의 발표대로라면 진상규명은 말 뿐일뿐, 앞으로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문민정부로서 새 정부가 과거보다 후퇴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민족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3년 3월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일본정부의 전 종군위안부 증언청취를 위한 한국방문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정부가 전 종군위안부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의 증언청취를 위한 방문의도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실한 진상규명에 있다기 보다 국제적 압력이 커지기 전에 강제연행 사실을 부분적 사례만 인정하는 수준에서 조기 타결하려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 증언청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일본정부는 지난 1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2차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는 이미 1차 보고서 발표내용이 아주 형식적인 것으로서 제목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고, 관계기관의 자료조사에 있어서도 6개성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고, 아주 중요한 우정성과 법무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2차 조사내용에도 종군위안부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일본국내 자료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일본정부가 우선 일본 국내의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모든 기관의 자료를 성실히 조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한국의 진상규명 전문가에게도 일본정부의 모든 자료를 반드시 공개하여 한일양국 전문가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우리가 주장하는 진상규명의 수준은 종군위안부 정책결정의 과정, 모집방식, 책임소재, 운영방식, 폐전후 종군위안부 귀환조치 여부 등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전모에 대한 조사이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단순히 강제연행에 대한 부분적 인정만으로 종군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을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

3. 또한 우리는 강제연행의 개념에 대해서도 국제관계에 따라 「사기, 폭행, 협박, 권력남용, 기타 일절의 강제수단」에 의한 동원을 강제연행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정부는 물리적 강제수단에 의한 동원만을 강제연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 의하면, 그리고 국제법의 개념에 의하면 종군위안부 전체가 강제로 성노에화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일부사례만을 강제연행의 증거로 삼으려는 그들의 의도는 일본의 책임을 왜곡,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4. 우리는 금년 2월말에 거의 1여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종군위안부들의 증언집을 발간하였다. 이 증언집은 정신대연구회 회원들이 전 종군위안부 할머니들과 여러차례의 만남을 통해 조사한 내용으로 일본정부가 이 증언집의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증언을 청취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일본정부가 증언내용을 조사하기 원한다면 우선 본회와 정신대 연구회가 공동발간한 1차 증언집의 내용을 증언으로 채택하기를 바란다.

5. 따라서 우리는 일본정부의 제 2차 보고서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한 후에 증언청취를 위한 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조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일본정부의 관리가 아니라 일정부가 위임한 민간단체 전문가와 한국의 관련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 청취가 아니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전 종군위안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1993년 3월 30일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아시아여성포럼에서 결의한  
일본에 의한 성노예 전쟁범죄에 대한 결의문

한국, 북한 그리고 필리핀의 일본에 의한 성노예의 생존자들의 가슴아픈 증언을 듣고, 전쟁범죄와 인권 범죄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하여 토론하고서, 생존자들이 여전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그러한 범죄는 국제법상 시효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우리는 유엔이 군대에 의한 성노예 범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전범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구(예를 들어 국제상설범죄재판소: an international permanent criminal court)를 세울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세계인권대회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현재적(current) 인 경우 뿐만 아니라 군대에 의한 과거의 경우까지도 힘있게 다루기를 권고한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안서를 참조하기 바람)

3. 우리는 일본정부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엔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기를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우선 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수많은 여성에게 저지른 군대에 의한 성노예의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나치전범자를 처벌한 독일인처럼 전범자들을 처벌해야 하며 희생자들에게 진정한 사죄와 함께 보상을 포함한 배상과 교과서의 수정, 추모비의 건립과 같은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정부가 그들의 범죄에 대해 완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일본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본다.

1993년 6월 1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필리핀종군위안부문제대책위원회,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북한종군위안부·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보상대책위원회

- 6. 29 두드 일본외상 방한에 즈음하여 -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줄속한 외교적 타협을 경계한다.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금까지 일본정부에게 강제종군위안부의 정책결정과정, 명령 집행체계, 전체규모, 연행방식 등, 이 문제의 전모를 밝히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성의없는 1차 보고서 발표이후 1년이 되도록 진상규명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2. 오히려 최근 일본정부는 국제적으로 여론화되고 있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도록 적극적 로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종군위안부 문제의 국제적 은폐를 기도하고 있다.

3. 이러한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은폐, 축소조작의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무또 일본외상의 한국방문에 대해, 본 협의회는 종군위안부 문제가 또다시 한 일간의 외교적 협상의 제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떠한 국내적, 국제적 은폐, 축소 조작을 중단하라!
2. 일본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책임자 처벌,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시행하라!
3. 한국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줄속한 타협도 해서는 안된다!

1993년 6월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

## 외무부 장관께 보내는 서한

외무부 장관 귀하

국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협의회는 어제 날짜(1993. 6. 28)로 무도 일본외상 방한에 대한 성명을 별지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차 이렇게 긴급히 장관님께 서신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아침 T.V 뉴스보도를 통해 일본 무도 외상방문 목적중에 하나가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조기매듭에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본 협의회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이 없이 조기 해결하려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규탄해 왔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사죄 및 배상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반성의 기색없이 전쟁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기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출속한 타협은 우리나라가 1965년에 식민지 지배의 면죄부를 일본에게 준 것처럼 또다시 굴욕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며 역사적으로도 잘못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본 협의회로서도, 국민들로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본 협의회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제에 의한 우리민족 박멸책과 인류역사상 전례없는 가장 참혹한 인권침해인 종군위안부문제 해결을 통해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극복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다급한 외교적 문제가 많겠지만 장관님께서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가 안고 있는 우리민족과 역사상의 중요성을 생각하시어, 금일 일본외상과의 회담에서 어떠한 출속적인 타협에도 응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93년 6월 29일  
공동대표 윤정옥  
이효재  
김희원

## 일본정부의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 전체적 논평

가) 전쟁범죄라는 본질을 회피한 발표로서 법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없다.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책임을 안지는 선에서 부분적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 가장 쟁점이 되었던 강제성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선 이하에도 못 미치는 매우 미약한 부분적 인정이다. 지난 7월 말의 일본정부의 피해자 중언청취는 우리의 예상대로 일본정부의 출속 진상발표에 이용되었을 뿐으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미야자와 정권 하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서둘러 진상조사 보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정부 역시 강력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2. 일본 발표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가) 위안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성격이 빠져 있다 :

위안부는 당시 공창제도 하의 일본 매춘여성과 달리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군대에서 성적 위안을 강요당한 성노예였다.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는 강제종군위안부를 매춘으로 인정하려는 시각이 존재해 왔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들에 의해 그러한 생각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매우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갑자기 “소위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일본 매춘여성 위안부들을 같은 범주에 넣고 있으며(4쪽), 위안소 설치 경위에서도 위안부의 성격 규정이 빠져 있는 것은 문제 본질을 회피하려는 저의이다.

또한 어린 나이의 미혼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위안부가 되었으며, ‘탄환’으로 분류되어 기록에 남는 식의 군수물자로 취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나) 위안소가 존재했던 지역에서 조선(당시)과 대만이 빠져 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 목포, 제주등에도 위안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또는 남북한)이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당시 조선이나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빠뜨린 것이라면, 이 문제에 임하는 일본 정부의 성실성과 우리에 대한 경시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 위안부의 총수:

“위안부의 총수를 나타내는 자료나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고 말했는데 매우 불성실한 태도이다. 정확한 수는 아니더라도, 당시 위안소의 수, 군인 수, 또한 최근에 발견된 연 3천여만개의 콘돔 지급수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추정치는 만들 수 있다.

라) 위안부의 출신지 : “전지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로서는 일본인을 제외하면 한반도 출신자가 많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인 여성은 성노예적 성격의 강제 종군위안부와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일본위안부는 당시 일본의 공창제 아래에서 위안부가 되었고, 돈을 받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이 끝

## 유엔 인권소위 결의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인권위원회 소수민족 차별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

제45차 회의

의제 15

8월 25일

1993/... 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행위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소위원회는,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 특히 제2부 B항의 문단 38에서 무장충돌의 상황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인권유린, 특히 살해,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강제임신등은 특별히 효과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세계인권대회가 강조한 것을 지침삼고,

여성과 어린이의 강간, 학대 등 가중한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 인권위원회의 1993년 2월 23일의 결의안 1993/8과 전투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인권유린을 비난한 동위원회의 1993년 3월 8일의 결의안 1993/46을 기억하며,

동 소위원회가 1992년 8월 14일의 결의안 1992/2 문단18에서 전쟁중에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에 관해 사무총장에게 요청한 것을 상기하고, 현대형노예제실무회의 제18차 회의의 보고서(E/CN.4/Sub.2/1993/30)를 환영하며, 현대형노예제실무회의가, 전쟁중의 여성의 성적 착취 및 타 형태의 강제노동에 관해 소위원회에 넘긴 정보에 유의하면서,

1. Ms. Linda Chavez를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으로 하여,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에 일어나는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 등의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말길 것을 결정한다.

2. 이 특별보고관이 일차 보고서를 제 46차 인권소위원회 (1994년) 예, 그리고 최종보고서를 제 47차 인권소위원회 (1995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3. 이 특별보고관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침해의 희생자를 위한 원상회복, 배상 및 자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내의 안전상황에 대한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접수한 문서를 참고하여, 관련된 사실들, 법률적 분석, 결론, 요망사항 등을 연구에 포함시키도록 초대한다.

4.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특별보고관에게 연구결과를 제 19차 현대형노예제실무회의(1994년)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5. 인권위원회가 다음의 결의문 초안을 채택해 주기를 건의한다.

"인권위원회는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소위원회의 1993년 8월 ..일의 결의안 1993/..에 유의해서, Ms. Linda Chavez를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여,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의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그 연구의 결과를 제 19차 현대형노예제실무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승인한다."

6. 경제사회이사회가 다음의 결의문 초안을 채택해 주기를 건의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위원회의 1994년 ...의 결의안 1994/...에 유의하면서, Ms. Linda Chavez를 전쟁중의 현대형노예제 및 노예제 행위, 특히 내전을 포함하여 전쟁중에 자행되는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와 같은 행위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년간 임명하기로 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고, 이 특별보고관이 연구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나면 위안부 생활을 그만둘 수 있었다. 일본인 위안부를 은근 슬쩍 이 보고에 집어 넣은 것은 강제종군위안부의 성격을 흐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마) 위안부의 모집에서의 강제성(7쪽)이 매우 모호하게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점에 비하여 너무나 성의가 없다. "위안부 모집에 관해서는 군 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영자의 의뢰에 의해 알선업자들이 한 것이 많으나..... 업자들이 감언을 하거나 공포감을 주는 등의 형태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케이스가 많고"에서 강제모집의 주체가 민간업자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군과 관의 관여에 대해서는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하는 등의 케이스도 발견되었다" 정도로 인정하였다. 1939년 이후부터는 민간업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군, 관이 모집에 나섰으며, 1940년 이후부터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이라는 기관을 통하여 군, 관, 민이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강제모집에 나섰다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 민간업자야 말로 군관의 강제모집을 지원했을 뿐이다.

바) 위안부의 수송(5쪽): "폐주의 혼란상황 하에서 현지에 두고 떠난 사례도 있었다"라고 발표하였는데, 현지에 방기하고 떠난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폐전 이후 집단몰살 시킨 비인도적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 명령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사상 유례없는 "증대한 인도에 반한 죄" 등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일본 군 수뇌부가 직접 기획, 명령, 경영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 3. 앞으로의 대책과 요구

가) 미야자와 정권하에서 졸속적으로 마무리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일본 새 정부는 전후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 일에 진지하게 임해주기를 바란다. 진상조사를 위해서 일본정부와 국회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3차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

나) 한국정부는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문제점이 많은 보고내용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며, 일본의 법적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다) 정대협의 대책활동

1)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하여, 현재 1993년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인권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법을 근거로 진상조사와 배상,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2) 정대협 차원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만길 교수 중심으로 연구조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과 정보를 교류할 것이다.

#### 3) 일본 검찰에게 곧 책임자처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

4) 우리의 7대과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이의 달성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1993년 8월 4일

한국 정신 대문제 대책 협의회

##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외교현안으로서의 종결’ 이라는 정부입장에 대한 질의

수 신 : 김 영삼 대통령 귀하  
참 조 : 한승주 외무부장관

### 1. 국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1990년 11월 구성된 민간단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쟁 범죄, 인권침해의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가까이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외면해 왔고, 3년전 부터 여성단체들과 몇몇 뜻있는 학자들의 문제제기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비록 뒤늦게 문제제기 되었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 유엔등 세계적연동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하여 일본정부와 국민이 과거 그들이 저지른 침략과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상규명과 사죄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 2. 우리는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일본정부의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외무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첨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의 발표는 정치외교적 수사의 나열로 교묘하게 치장되어 있을 뿐 문제의 본질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종군위안부가 전쟁범죄라는 본질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발표 이후 따를 수 있는 후속조치로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부는 “일본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수용한다.” “우리정부의 입장을 상당수준 반영한 것”이라고 적극적인 긍정을 표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보 진전된 일본정부의 조사를 평가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함이 올바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문제의 담당 실무자인 유병우 아주국장은 “군대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한일간의 외교현안으로는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해야할 추가조치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의 자주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적 현안의 매듭 선언’은 훨씬 신중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서둘러 매듭짓는 것에 대해 크게 비판적입니다. 도대체 종군위안부 문제때문에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크게 손해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길

래 이처럼 우리 정부가 서둘러 매듭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과거 1965년 한일협정에서 모든 배상은 마무리되었다고 거의 완벽하게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다시피 함으로써 큰 우를 범했는데, 이제 귀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런 우를 범하시려고 합니까? 이 발언에 대한 귀하의 공식적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이번 외무부의 실책에 대해 한승주 외무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유병우 아주국장은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본 신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한 사람이 계속 이 일을 담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종군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원칙적이고 합리적이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우선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면 진상규명이 일차적입니다. 과거 침략역사에 대한 반성과 교육이 불철저했던 일본으로서는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줄 수는 있지만 진실을 양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배상의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배상을 정부차원에서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대통령의 그 뜻이 한일협정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요? 우리는 일본에 대한 법적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관련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며, 국제법과 한일협정에 대한 재해석등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진상규명과 더불어 배상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급하는 ‘군대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이 일본의 의도대로 한일협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과 정부로서 역사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뜻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50년 동안 기구한 우리의 현대사 속에서 묻혀온 이 비참한 인권유린과 전쟁범죄의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통해서 한일 간에 평화와 인권존중, 정의를 존중하는 인식이 크게 꽂피고, 한일관계가 진정한 이웃으로서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신에 대한 회답을 8월 30일 이내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3년 8월 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

별첨 : 일본정부의 2차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겨례 '93. 1. 28]



[여성신문 '93. 1. 22]

# 일본의 플루토늄 반입 규탄 시위 열려

일본 대사관 앞서, 환경단체·정신대·할머니 함께 참가

인분의 풍부토류 반입을  
반대하는 환경사회의 단체의 반발  
이 점차 가지고 있다.

프루토늄 1.7톤을 실은 수중  
선 아카스기호가 프랑스의 셀부  
로함을 침몰한 지 두 달만에

인분에 도착한 지난 1월5일, 시흥중학교 인문대사관 앞에서 그동안 주민운동인원, 민족자료 정부설 등 활동단체의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이날 시위는 지난해 1월80%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정신대책 위기회 정신대학민니들의 수요시위와 동시에 지리적 더욱 확장을 꿔았다.

김회에 참석한 정내회 이효재 공동대표는 “일본정부는 경신대 모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와 뒤워침없이 또 다시 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해무상을 통한 일본의 군사강대국화를 지닌 것으로 알리지 있다. 김원식 설상은 “이번에 도카이형에 도착한 175t의 큐쿠도급이면 나가사키에 부하된 것과 같은 위쪽 2백여t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의 프랑스에 재지리를 맡긴 풀무도그의 반인미도에 오는 2010년까지 영국과 프랑스에서 30톤의 풀무도그를 더 들여온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위에 참가한 8개 환경단체  
회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세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파괴하는 플루  
토늄의 대량반입 계획을 포기하  
라”고 밝히고 한국정부에 대체  
시도 일본의 해부상과 군국주의  
부활기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선포하고 밝히고 이를 지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일, 공중경보기 2대 또 구입

94년도 예산 반영

【도쿄=김효순 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미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의 구입을 93년 예산에 올린 데 이어 94년 예산에서도 2대를 구입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청이 91년부터 95년  
까지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정한 조기경보기 4대 구입 방침을  
이제 확정 1년을 앞두고 달성  
하려는 생각이라고 밝히고 병기구  
입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빌 클린  
턴 미 행정부에 대한 배려의 측면  
도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그러나 세계적으로 긴장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당 5백70억원이나 하는 고가의  
조기경보기를 2년 연속 구입하는  
것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된다.

日、해폐기물 재반입  
佛로부터 3천 컨테이너분  
【東京】 日本은 폐기물을 재반입해 계약  
프랑스와 중국으로부터 컨  
테이너 3천개 분의 해  
이 26일 밝혔다. 일본이

## 일본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 검토

교도통신 보도 조사결과 4월까지 한국전달

**[도쿄=연합]** 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협인인 종군위안부(정신대) 문제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놓고 오는 4월까지 한국쪽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양국간 협인의 조속한 타개를 위해 △추가조사 보고서에서 위안부의 동원이 강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거나 △보고서에 명기하지 않고 관방장관이 정부 견해로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또 한국이 종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생활지원금 등의 형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데 대해 "일본이 조사 결과를 전달하기에 앞

[2] 1993년 2월 7일 (일요일)

(4판)

[한겨례 '93. 2. 7]

사설

## 정신대 할머니들의 아픔과 정부의 도리

일제 때 일본군의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던 한 할머니가 고통스런 삶을 마감했다는 짧막한 보도가 며칠 전에 있었다. 할머니는 환해 해수에 서 대낮에 군용트럭을 몰고 정신대 사당에 나선 일본군에 끌려가 중국 하얼빈에서 종군위안부 노릇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왔다며 했다. 그 치욕의 삶이 부끄러워 경북 영덕의 비단가에서 혼자 미역을 뜯어 살기도 했고, 계통산 아래의 판집에서 나물을 캐며 사람들을 피해 살았다고 했다. 종군위안부 시절에 옮겨鞠어 살이 생긴 내내 자신의 육성을 깎아먹던 매독이라는 그 꿈꿔한 병마를 할머니는 죽음에 이르도록 가까운 친척에게까지 감춰왔다고도 했다. 그 할머니가 마침내 숨진 것이다.

풀이켜보면 당해버린 나라의 어느 누구도 이 민족 병사에게 끌려가는 제 나라 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해방된 조국 또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수난의 여인들에게 용서를 빙기는커녕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았다. 그 비정함, 그 냉혹함이 오늘의 우리 정부 안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음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엊그제 종군위안부의 생활지원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무부가 소집한 관계부처 실무대책위원회가 그러한 방안에 반대해 온 예산당국과의 회의 불참으로 실질적인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나라 예산으로 종군위안부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은 도와주는 셈이라 는 예산당국의 반대논리는 학파하기까지 한다. 그러한 주장은, 이미 정신대 모집과 징집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진상규명과 사죄는 외연하면서 생존 피해자들의 생활을 돋는 기금창설 운운하는 일본 정부 태도를 겨우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는 정부의 그러한 생활보호대책이 곧 발표

될 것으로 알려진 일본 정부의 정신대 진상조사에 부답이 됐으면 됐지, 거꾸로 그들의 주장은 뒷받침해줄 것이라는 설명에는 도무지 날들이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일본 정부의 진상조사나 억지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미망히 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정부가 정신대 피해자 생활부조기금 운운의 방지한 태도를 보여온 것도 정신대 할머니들의 비통한 삶을 외연해한 한국 정부의 부도덕한 자세에 대한 경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말 발족된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모으기 국민운동본부'의 벌기취지문이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될 것이다. "이제 살아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들은 역사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소중한 역사의 증언자들이다. 우리가 '절지한 진상규명이나 사죄 없이 주는 피해자 보상'을 반대하려면 우리 정부와 국민이 나서서 할머니의 생체를 둡고 위로하는 일을 벌이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종군위안부 및 근로 정신대 피해자는 모두 2백36명이라고 한다. 대부분 심신이 함께 지칠대로 지치고 껏길대로 껏긴 일흔 안팎 정신대 할머니들의 길지 않을 여성이나마 덜 고통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보살피는 일은 그야말로 우리 정부의 당연한 도리이다. 할머니들이 차례로 세상을 하직하는 것을 봤을 때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어기적거리는 정부의 무신경과, 특히 예산당국의 빛나간 문제의식은 딱하다 못해 분노마저 일게 한다. 제 나라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마저 저버리는 부도덕한 정부에 되돌아올 것은 이웃의 경멸밖에 없다는 점을 짐작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

[한겨례 '93. 2. 10]

동네방네

9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는 태평양전쟁유족회 주관으로 1백50여 조각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구하고 한 많은 상을 살피간 한 할머니의 영결식이 치러지고 있었다.

고 한강언, 70살, 1923년 경기

강화 충성, 1993년 2월 3일 서울

극립의료원 521호술서 사망, 망

자와 이 짧은 생의 기록에는 그

도 북쪽에 머물던 한 할머니는 전쟁뒤에는 피난행렬을 따라 경북 경주까지 내려갔고 이곳에서 산파일을 하며 35년간 과거를 잊은 채 흙풀으로 타향살이를 했다.

한 할머니의 수난은 여기에서

도 끝나지 않아 지난 80년 40년

더니 정신대라

는 지울 수 없는 치욕의 상

흔으로 인한

길고도 고통스런 삶이 감춰져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 아

육이 절정에 달한 1940년 18살

때 해주에서 친구와 시장 다녀

오는 길에 일본군에 강제 납치

되며 주민 하일빈으로 끌려간 한

할머니는 일제가 폐망할 때까지

그 지옥같은 종군위안부로 몸과

마음유 려웠다.

해방이 되었으나 나라가 분단

된다면 몸으로 피어나길"

기도하며 지내다 일으로 한 많은 일생을 헌신했던 것이다.

정신대 할머니 들키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영훈 전 한국

방송공사 사장은 "누님의 일생은 꿈 민족 수난사의 상징"이라

고 말하고 "나리가 독립된 지

40여년이 넘도록 일제인정의 역

사를 청산, 광복하지 못해 살아

남은 한 사람으로 부끄럽다"며

한 할머니의 명복을 빌었다.

"설미를 냉기며 처녀가

단에 병든 몸을 이끌고 고향을 찾았으나 할머니를 빙긴 것은 남파간첩으로 오인한 조카딸의 간첩신고였다. 수사기관에 불려

가 또다시 곤욕을 치러야 했던 할머니는 세상사람들이 무섭고

싫어져" 계룡산 입구의 외딴 집에서 종군위안부 때 얹어 이미

전신에 퍼진 '몹쓸 병'(매독)을 고칠 생각도 못하고 "오직 내세

단진 물음이다.

이인우 기자

[한겨례 '93. 2. 17]

## 정대협 '정신대 만행' 세계에 알린다

일본의 정신대 만행을 전세계에 알리는 대회활동이 활발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정신대 만행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순회강연을 비롯해 대표단원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강제 종군위안부 아시아연대 회의, 보스니아 집단강간 항의시위 등에 파견해 전세계에 일본의 정신대 만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정대협은 정부가 지난 1월 27일부터 시작한 미국 순회강연은 외성된 등 미국 각지를 둘며 이 공연회에서는 한국 정대협 신임수 대표를 비롯해 네덜란드의 정신대 피해자, 영국 오스터리얼리아 주민과 뉴질랜드 네덜란드 전쟁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을 예정이다.

신 후작장은 지난 11월 출국에 앞서 "우린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일본의 정신대 만행을 전쟁범죄로 규탄하기 위해 미국전국여성연

미국 순회강연...유엔 인권위 참석

'보스니아 집단강간 항의시위' 동참

3월 1일 세계여성 연대규탄 추진도

한(NOW)이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를, 이 시위에는 미국의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를 비롯해 유럽 각국, 이집트, 뛰나지 등에서 수만명이 참가·관람 예정이며, 아시아여성 한국이 유일하게 초청돼 정 교수 가 참가한다.

미국전국여성연합은 지난 1월 말 "한국의 정신대 문제는 보스니아 집단강간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 일어난 여성 인권침해"라면 서 "한국의 강대협이 꼭 참석해 현대와 지지를 호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대협이 지난 1월초 전세계 여성단체에 오는 3월 1일 세계 각국에서 정신대 만행 규탄 국제 연대시위를 갖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각 나라의 호응이 높아 이날 연대시위가 동시에 벌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신연숙 기자

[한겨례 · 93. 2. 17]

스위스의 국제적 인권조직인 국제화웨디에는 15일 증근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한-영행복의 발언에서 1995년의 사법보조약에 대해 유엔의 국제재판위원회가 그후에도 견학을 이미 발표한 사실을 공개했다고 〈미아이치 국제재판위원회의 63년 보고는 국제관행을 법문화한 '조약법'에 관한 빙조약의 원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약의 서명·비준이기 전에 우해 개인에게 강제·협박이 가중진 경우는 국가가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강제로 맷은 을사조약무효” 유엔국제법위 30년전결론

## 일제 위안부·병역 합법성상실 가능성

국사의 대표자에게 감기로 해  
결기도로 한 조약의 전횡으로  
서 유시보호조약을 털어 무효  
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 증군위안  
부들에 대해 당시의 법제와 비  
례 위법성을 증명하도록 요구  
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정평  
의 법률에 따라 한국인에게  
과해진 벌역을 포함한 모든 행  
위는 국제법상 위법”이라고 결  
론지고 일본 정부이 앞로 당시  
의 증군위안부, 강제노동 등  
과 대안 학생들을 광주에서  
방문하고 주장을 펼쳤다.

외 의안부뿐만 아니라 군인·군  
속 징용의 근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보호조약의 유효성  
여부가 북한·일본 수교교섭에도  
영향을 끼쳐 일본으로서는  
어려운 문제를 인계 된 셈이라  
고 밝혔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63년의  
보고에 대해 “(보호조약) 관  
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  
지만, 위원회가 공식으로 협약  
한 것이 아니며 일본으로서는  
보호조약이 국제법으로 험수가  
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  
했다. 도쿄/김학순 특파원

【도쿄 = 교도 AP 연합】 일본을 방문중인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유엔이 계획중인 모잠비크에서의 평화유지활동에 일본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부트로스 갈리 총장이 이날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과 1시간30분간 요담한 자리에서 이렇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야자와 수상은 일본 현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교도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미 유엔으로부터 모잠비크에 20~50명의 경찰 유치군을 파견해 달라는 비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 앞서 일본의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해 일본한법 개정에 대한 회향을 꾀하려는 바 있는 갈리 총장은 미야자와 수상과 회담에서는 한법개정은 일본의 국내 문제라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나 일본의 평화유지활동 확대안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갈리 총장은 이날 (NHK 라디오)과의 회견에서도 소밀리아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일본이 군대를 파견해 주기를 회향한다는 입장을 괴력혔었다.

정신대 피해자 보상  
각국人权단체 측구  
제네바에서 회동한 바  
【부록】 정신대 피해자 보상  
책임의회(責任委員會)는 23일  
의 오후 10시 30분에는 23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萬  
례데 나시ون)에서 회동기  
자회장을 두고 2차 대전  
동아 93. 2. 24.

[동아 '93. 6. 29]

【東京】(慶) 日本의 아  
스카(鶴鹿) 민간교류기념사  
연설회가 주최한 제2회  
동아시아 국제설포지엄  
이 26-27일 개최된다(橘)  
演者(講演者)로는 전자(南  
北韓) 양현(楊賢)·중(中國) 양현  
학자(學者)·한(韓) 가운데  
에 있다.  
이 설포지엄설회는 27  
일 동아시아 각국과 서對  
북한 해수통로를 위한 공  
동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다.  
설포지엄설회는 「한(韓)·  
중(中國)·일(日本)·대한  
민국·미국·영국·프랑스·  
독일·캐나다·호주·뉴질랜드·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서(西) 유럽·각국의 학자·  
식물·동물학자·생물·각국  
민족·문화·언어·종교·정치·  
복지·에너지·환경학·자연  
계의 제2회 대회(大會)로  
제2회 대회(大會)로



## 일본 전쟁범죄 규탄 함성

한-미-일-필리핀 연대전회

3·1절 74돌을 맞은 1일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는 일제의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민족자존의 정신을 기리는 집회가 이어졌다.

특히 미국·일본·필리핀 등 3개국에서도 정신대 문제·감제징집 등 일제의 민행을 규탄하는 첫 국제연대집회가 동시에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일본 도쿄에서는 이날 오후 와 세다봉사원에서 '일본의 전쟁책임

을 분명히 하느 도모' '김제종군위  
안부 행동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주최로 대관령전쟁중 종군위안부  
로 끌려갔다가 지난 3일 숨진 한  
장연씨에 대한 추도식을 가졌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이날 정오  
(현지시각) 필리핀 주재 일본대사  
관 앞에서 정신대관련단체 주최로  
규탄집회가 열렸으며, 미국 뉴욕  
에서는 뉴욕장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회원들 중심으로 재미동포 1백여  
명이 유엔본부에서 거기대회를 가  
진 뒤 하미슐드 광장에서 일본대  
사관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고 정  
신대문제협의회 측은 전했다.



[동아 93. 3. 2]

## 挺身隊참상·세계에 알렸죠

UNION BANK OF KOREA

[한겨례 · 93. 3. 14]

# 위안부 보상 일본에 요구하기로

김대통령 정부예산서 해결...진상촉구는 계속

김영삼 대통령은 13일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물질적 보상금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 나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칭화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들에 대한 “그렇게 했을 때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관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대일외교를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그러나 민간단체 또는 피해자들은 이 개별적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문제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겨례 '93. 4. 20]

#### 정신대할머니 '나눔의집' 기금마련 서화전

조계종의 내로라 하는 큰스님들을 비롯해 선화의 대가들과 기성 작가들이 공동참여해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기금미련 서화전을 연다. '나눔의 집 전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원주 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는 21~28일 서울 관악동 빙상갤러리에서 '고승·명인 서화·도예·조각·화학전'을 마련한다.

이 서화전은 서울(조계종 전 종재), 서주(부산·조선), 월성(부구)

사 조실) 창강(태안사 조실) 원담(수덕사 방장) 일타(해인사 윤주) 큰스님들과 비구니 목불 큰스님(동학사 관음전)의 서화·사군자·선화 등이 출품된다. 이밖에 설봉 스님(무애원 원장)의 도자작품과 신영복씨의 서예작품, 작고한 허백련 김장현의 동양화도 선된다. 악필 창법의 홍목이 지난 3월 작고 이에 풀 건네준 두점의 작품과 재일 독포 광대준씨의 자작도 전시된다. 또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 대표 시절 쓴 '대도무문' 친필과 김대중 씨의 '이충무공 진종시' 등 서예 넉점도 눈길을 끈다.

서화전 추진위원회 진관 스님은 "2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은 지난 1년간 도아진 3억원의 성금과 함께 경기도 광주지역에 세울 예정인 '나눔의 집' 건립비용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725-0452

[한겨례 '93. 4. 21]

## 정신대 진상규명 활별

남북한 정신대 할머니들의 증언,  
국제변호사협회의 정신대 진상조  
사작업 등이 이따라 관심을 모으  
고 있다.

오는 24~30일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열리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1차 토론회에 남북한의 할머니 2명이 참석해 일제의 창건 100주년을 토로한 것이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일본에 유학 갔던 이른 과거는 중연할 생존자는 남부의 김복희 외에 나머지 쪽은 정문복 할머니 등 2명이다. 남북으로 이동해 살고 있는 한인 가족들의 재집 증언은 지난해 말 도쿄에서 열린 '일본의 친후보상에 관한 국제공청회'에 참가해 중연했던 김

남불하 생존자 2명 익보서 마해 즐어

국제변호사협회 배상 범률무제 거트

영실·강순애 할머니에 이어 두번  
된다.

영실·감순에 일어난에 이어 두번  
되었다.

미국에 본부가 있는 국제변호사  
협회의 진상조사작업은 한국 등  
를 돌아다니며 한국에서 실시된다. 한국  
에서 그 결과는 미 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오는 27일 한국을  
방문해 발표된다. 이를 번호사는  
5월 1일 가지 서울에 머물며 종  
안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증  
듣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설립위원회 및 '민주화를 위한  
호사드임'의 정신대연구회  
변호사들과 법률적인 문제를  
갈등화를 가장 예정이다. 이  
집단과 생존자들의 사는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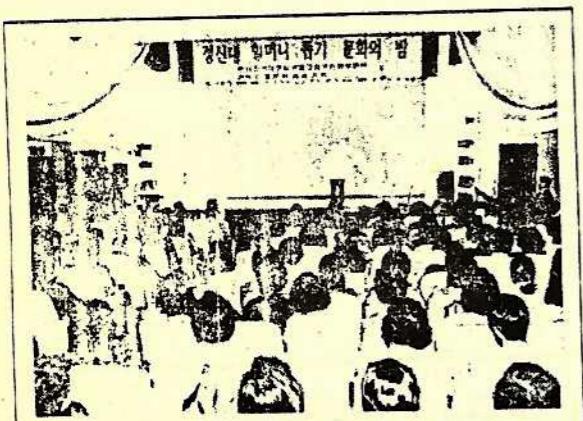
살펴보는 한편, 태평양유족회 사무실을 방문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종군위안부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내용과의 면담도 갖는다.

국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은 한국 방문에 앞서 필리핀과 일본을 방문해 정신대 피해자와 민간단체, 정부 담당자 등을 만나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를 들고 왔다. 이들은 조사활동 보고서를 오는 5월 제네비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 위원회 소위원회의 현대형 노예제도 실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사결과가 앞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중근위 인부문제를 다루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보 훈신문 '93. 5. 6]

[한겨레 · 93. 6. 27]



## 정신대 할머니돕기 마지막 모금행사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보금을 위한 '정신대 할머니 돋기 문화의 밤'이 25일 저녁 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정신대 할머니들을 우리 손으로 돋자"는 취지로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모금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서영훈 윤정옥)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모금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날 행사에는 인·아인 5백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시연중 곤동대표는 “모금이 애초 목표 10억원에는 미치지 못 했지만 정부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만들도록 하는 성과를 거둬 국민운동본부는 이달말로 해체하고, 7월부터 할머니들에게 생활기금을 나눠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년대 원미니 생활기금 모금을 주도적으로 해온 이미경 사무국장은 “앞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일제한 민족수난시인 정신대문제 진상규명활동에 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신대문제 해결방안

남북한 「증언할머니」 등 25명 참가

- 124 -

“정신대등 전쟁범죄처벌  
국제법상 시효제한 없다

[교류선집] 종교의 안무와  
간제노예, 죄악에 대한  
간

कल्पना दर्शन एवं विज्ञान की  
मौजूदा स्थिति अवश्य बताया जा-  
ये। इसका उपर्युक्त लाभ यह है कि  
विज्ञान की विकास की विधि का अभिज्ञ  
को अवश्य बताया जाएगा।

[한겨례 '93. 5. 21]

## 정신대 돋기 거리한마당

## 내일 명동서 생활기금 모금 행사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마련을 위한 거리문화한마당'이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 명동 상업 운행 앞에서 열린다.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모금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여성문화예술기획이 기획한 거리문화한마당은 오전 9시30분부터 모금을 중심으로 한 1부 행사가 있고 오후 2시부터는 여성학자, 윤숙희씨의 사회로 가수 이선희·신현원씨의 노래를 비롯해 임진택씨 관소연, 맘편 풍물, '한두레놀이페'의 연극 '소리없는 만가' 공연, 김경란씨의 춤, 노래와 새나들이 세광과 여성민우회 어머니 노래단의 노래 등 문화한마당이 진정된다. 주최쪽은 일반인들의 모금 참여를 위해 거리문화한마당이 펼쳐지는 동안 거리등 원대에 50개의 모금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거리문화한마당을 기획한 여성문화예술기획 이혜경 대표는 "가족도 없이 단간 원나잇방에서 취로사업을 하며 어

정신대 생활기금 모금 포스터  
렵게 살고 있는 정신대 할머  
니들을 돕기 위한 모금은 단  
순히 불우이웃돕기 차원이 아  
니라 금세기시기 아픈 역사를  
비로 늘고 우리 손으로 할머  
니들의 생활기금을 마련하자  
는 민족자존의 뜻이 담긴 것”  
이라고 등첨을 호소했다. 국민  
운동본부는 지난해 말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10억 원 마련  
을 목표로 모금운동에 들어갔  
으나 현재 모금액은 1억 2천여  
만원인 미루는 실정이다.

[한겨례 93. 6. 27]

# ‘인권선언’ 만장일치 채택

세계인권회의 폐막 유엔인권판무관 신설 권고키로

## 한국대표 맹활약 '종군위안부'삽입 관철

[빈=외신 종합] 넌진 이후 새로운 인권개념의 정립과 인권보호방안 수립을 목표로 있던 유엔 세계인권회의가 25일 '인권에 관한 빈·선언 및 행동계획'을 친기국 만장일치로 제택하고 2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파리=AFP 연합뉴스]

로 하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신설을 올 가을 유엔 총회에서 우선사항으로 다뤄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애초 개막 때부터 인권과 보편성 인정 등을 둘러싸고 낭부기이 남카로운 대립을 보

세계인권신언 45주년을 기념해 세계 71개국 외무·정부관료 대표와 1천5백여명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빈 선언을 통해 세계 각지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 및 보고를 임무로 맡겨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신설 대신 유엔 총회 권고 등으로 양쪽이 최종일 밤(현지시각) 타협점을 찾아 선언 챕터에 성공했다. 함께 논란을 빚은 국제인권재판소

설치문제는 유엔 국제법위원회에서 현재 검토중인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는 형태로 합의됐다.

빈 선언은 이와 함께 인권은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동일한 근거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고 밝혀 인권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유엔의 인권보호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선언에서는 특히 여성, 어린이, 소수민족, 원주민의 권리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이 새롭게 강조됐다.

새로 등장했다.  
이번 회의에는 또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인권단체가 처음으로 한데 모여 별도 포럼을 여는 등 활

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정신 대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한국 대표들은 애초 선언 문안에 없던 종군위안부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는 등 돋보이는 활동상을 보여 참가단체들의 갈채를 받았다. 애초 선언 초안은 행동계획에서 '모든 부녀족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기술돼 있었고 그나마 일본 정부는 '모든'이란 문구를 '현재 진행중인'으로 고치기 위해 로비를 펼쳤으나 정대협 등은 적극적 선전활동으로 오히려 '조직적 부녀족행 및 종군위안부'라는 구체적 표현을 추가하도록 해 일본에 외교적 패배를 안겨줬다.

[동아 '93.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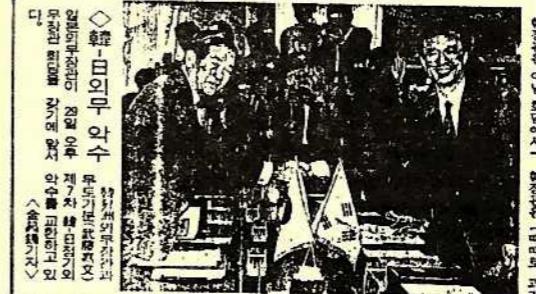
3千명名單 새로 발견  
日帝징용 한국인 포로

3천인의 명단이 새로  
접대 대상으로 간체연행선  
자료가 된 정호로 보인다.  
명단은 任仁甫 宋英根  
씨(76교도시내)가 보관  
하고 있던 경장고 가로 20  
cm 세로 40cm 크기의 종이  
31쪽에 걸쳐 朱漆 활비로  
한 학국인 邵 3천인의  
이름과 주소가 지역별로 분  
류되어 있다.  
일제 폐망 이후 하와이  
수용소에 수감된 학국인  
포로들은 그곳에 돌아가면  
서로 연락하기 위해  
수용소를 드나들던 미국인  
선교사의 지침으로 명단을  
인쇄, 나누어 전진 것이라고  
주제는 선행했다.  
宋씨는 1914년 태평  
양의 데나안 선으로 접종  
케 비행장 진설할사원 하  
당국 미군의 상봉으로 명단  
본문 병사들은 대부분 「국  
제」하고 일만 생존, 미  
군의 품종과 되었다고 말  
했다.

[조선 '93. 6. 30]

# “과거문제 제기 않겠다”

韓외무 日외상에 객관적조사 촉구



## 북한核공조체제 강화 시장논리로逆調해결

외무회담

挺身隊」내년 高校교과서 수록

[조선  
'83.7.1]

- 126 -

- 127 -

[한겨례 '93. 7. 7]

일본 “안보리 상임국 하겠다”

####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 의견서 제출

**[도쿄 = 김효순 특파원]** 일본 정부는 6일 유엔 안보리에서 “할 수 있는 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의사 를 명시한 의견서를 마련해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공헌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나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보리와 유엔의 강화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상임과 비상임을 합쳐 현재 15개국으로 돼 있는 이사국 수를 20개 정도로 확대 할 것을 제안했다.

의견서는 상임이사국 선정과 관련해 "그 나라가 정치·경제 등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세계적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로 외상은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의 를 안에서 책임을 져 나갈 것”이라고 밝혀 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 군사참모위원회나 유엔군 참가 등 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강제적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 우정상은 “할 수 있는 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문안에 대해 “일본은 무력행사가 뒤따르는 공чин이나 협력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신대 증언 오늘 청취

일정부 대표단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청취단 일행 7명이 25일 오후 3시40분 아시아나항공 101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기무라 마시유키 일본내각 외점  
심의관 등 증언청취단은 이날 김  
포공항에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  
에 대해 "오늘은 아무런 말도 하  
지 않겠다"고 거절한 뒤 일본대사  
관쪽이 마련한 승용차편으로 숙소  
인 대사관으로 향했다.

체는 25일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  
부 피해자증언청취단의 방한과 관  
련해 공동성명을 내어 "이번 증언  
청취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를 온  
폐·축소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술  
어 있다"고 비난했다.

증언청취단은 일본 수상부, 외무성 등 정부 관계자 5명과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군위안부 증언청취는 26일 오

이들은 "일본 대표단의 방한은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실한 진상규명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 압력이 더이상 커지기 전에 증언침취를 마지막 절차로 종군위안부 문제를 서둘러 타결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에 "피해자 증언 침취에 앞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발굴·조사해 2차보고서에 담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례 '93. 7. 26]

◆ 金正日(金正洙) 日本  
政治家。朝鮮民主主義人民  
共和国元老院副委员长、大  
臣、部长。朝鲜劳动党副委员  
长。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  
最高领导人。朝鲜劳动党第  
一书记。朝鲜人民军总司令。  
朝鲜人民委员会委员长。

## “挺身隊 내달 매톱”

## 武藤외상 곧 최종입장 발표

[동아 '93. 7. 28]

本章의 최종장면 밖에  
있단 말았지?  
무려 10년이란 서예  
에서 태어나고 있는 헤이  
인 「나는 그대를 봐온다」  
이라는 노래로 10  
갑자기 그녀는 그녀에게  
보고 싶어 무한시를 듣고  
라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에 대한 그녀에게 그녀가  
더 이상은 그녀에게  
더 이상은 그녀에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  
는 것을 다시 한번  
들구

# “痛惜의 念 수준 못벗었다”

정대협은 특히 위안부의 성적 구성을 출자·출신지·위안부의 이송·명령체계·위안부수선처·지역 등에 대해 칭찬하고자 했다.

[국민 '93. 8. 5]

- 128 -

- 129 -

# “전쟁범죄 본질 회피” 반발

정대협·유족회 일본정부 ‘위안부’ 책임 떠넘겨  
진상규명 위해 연대활동 펴기로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 문제 2 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해 한국정 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공동 대표 윤장옥) 등 관련단체들이 “전쟁범죄라는 본질을 교묘히 회피한 발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할 때까지 피해국인 아시아 지역 국가 민간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더욱 강력히 펴나가기로 해 이번 발표로 종군위안부 문제를 조기종결하려 했던 일본 정부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과정이 크게 변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교회사연 학연회·여성민우회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정대협은 4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 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번 일본 정부의 진상조사발표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즐속 발표”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에 대해 성의 있는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정대협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군·관·민이 공동으로 위안부 강제 모집에 나선 명백한 자료들이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관여해 감언·감암으로 위안부를 모집한 사례가 많았다”는 식으로 위안부 강제연행의 책임을 교묘하게 민간업자들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정대협은 특히 “종군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 운영 등에 관한 일본군의 조직적인 명령체계를 명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그동안 정점이 쇄온 핵심 내용이 대부분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또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문제뿐 아니라 강제징용 군인, 군속 등 일제의 또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는 물론 피해배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유엔 등 전 세계에 일제의 만행을 날마다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열기로 했던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총회를 9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범민족대회의 통일대축전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남북한의 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범청학련 총회 개최를 범민족대회 불허의 이유로 거듭 밝히고 있어 범민족대회의 원활한 성사를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93. 8. 5]

# “종군위안부 배상해야”

뉴욕타임스 사설 일본 새정부에 과거만행 자백 촉구

【뉴욕=연합】 미국 〈뉴욕타임스〉는 8일 사설을 통해 일본의 새 정부는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의 진상을 좀 더 솔직히 자백해야 하며 현재 60~70대가 된 종군위안부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에게 직접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새로운 일

본 지도자들이 일본이 1945년 이래 받아들인 외교적 구속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외교적 구속을 가져왔던 가공할 만한 범죄행위를 털어놓고 자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특히 몇년 전 일본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에 배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나 부유한 일본은 삶을 짓밟힌 피해자들에게 개별적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며 종군위안부에 대한 직접배상을 촉구했다.

이 사설은 전쟁범죄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없는 대부분의 일본 국민에게도 일본의 근세역사

에 대해 그리고 이와 관련해 일본이 아시아 각국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타임스〉 사설은 2차대전이 끝난 지 근 반세기가 지난 현재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옳은 일인지만 그에 앞서 일본은 오랫동안 입다물어온 과거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솔직하게 시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일제 하에서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종군위안부나 강제징용으로 끌려갔고 중국 난징에서는 불과 6주 동안 10만~30만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살해되고 2만여 명이 강간당했으며 그밖에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에서 갖은 만행과 세균실험 등을 저질렀다고 서술했다.

**‘위안부’ 만행 은폐말라”**  
제야인사 8백15인 ‘민족선언’

일본에 해외파병 중단등 촉구

박현서 범민족대회추진본부(범추본) 일본문제부 위원장, 이효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해학 범추본 공동의장, 장임원 민교협 공동의장 등 제야인사들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종구 세실리스토랑에서 ‘8·15에 즈음한 8·15인·민족선언’을 발표해 일본 정부에 종군위안부 만행의 전모를 축소·은폐하라는 행위를 중단하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선언에서 또 “자민당의·일당독주가 끝나고 사회당이 대침폐하는 일본 전후체제의 붕괴

는 결국 신보수주의자들의 대동단결로 나타나 신군국주의가 부활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파선노령 중단 △지위대의 해외파병과 과도한 핵무장 중단 △일제 위안부 만행의 전면공개와 배상 △징용노무자의 미지급 공탁금과 종군위안부 등의 군사우편저금 반환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선언에는 문익환 목사, 고은·단병호·김근태씨 등 재야인사를 비롯해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 이문옥 전 감사

[한겨레 '93. 8. 10]

# 일 수상 '침략전쟁' 시인

첫 회견 과거 매듭 국제협력 다짐...미-일 외교 강화 강조

**[도쿄=연합]**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 수상은 10일 오후 "제2차 세계대전은 침략 전쟁이며 잘못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과거 역사에 대해 반성과 함께 분명한 매듭을 짓고 평화와 국제 협조를 위해 책임을 다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호소카와 수상은 이날 취임 뒤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외 문제 전반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가운데 이렇게 강조하고 "반성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는 앞으로 강도하겠다"고 말했다.

호소카와 수상은 "미-일 관계 강화는 일본 외교의 축으로 양국 뿐만 아니라 세계 관계에도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참여는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자연적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험영한다"고 말

했다.

호소카와 수상은 미국 방문 문제와 관련해 "오는 9월 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현재 겸토중"이라고 말해 유엔 총회 참석과 함께 미국 방문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사정이 허락한다면 이를 가능 미국 시애틀에서 열릴 계획인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아PEC) 정상회담에도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조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규제

[한겨레 '93. 8. 11]

남북한대표 인권소위서 전문가팀 운영 촉구

**[브뤼셀=연합]** 남북한은 10일 '평화' 문제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유엔' 전문가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아늘' 속개된 제45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 지난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깊이 있는 진상조사를 위해 유엔 전문가팀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임무수행에 들어갈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일본 정부에 대해 특정당사자를 상대로만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되며 모든 한국인의 감정진용에 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도 아울러 촉구했다.

한편 일본은 유엔 등록 비정부 기구(NGO)인 국제교육개발 등 인권기구들과 전문가들의 발언이

계속되자 애초의 답변신청을 취소하고 추후 관련의제 토의 때 입장 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날까지 세계 교육협의회 국제교육개발 등 많은 인권단체가 일본의 전시 인권침해에 관한 비판을 제기하고 진상조사와 배상 등을 요구해 보스니아 내전 여성피해와 함께 가장 중요 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 대표는 "위안소 가 민간에 의해 운영됐다는 일본 정부 발표는 중대한 사실왜곡이며 책임회피"라고 전제한 뒤 일본이 완벽한 진상조사와 남북한 만한 '자회' 적절한 배상 등을 본질적 해 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유엔은 일본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밝히기 위해 전문가나 특별보고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32 -

"유엔에 조사팀 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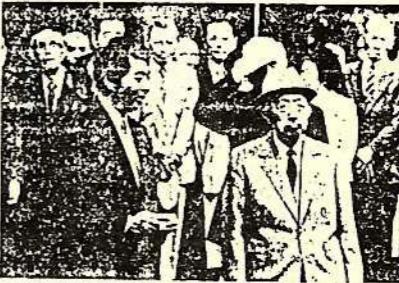
# 자위대 해외파병 확대 포석인듯

일본수상 침략전쟁 시인 배경

중 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전쟁에 대한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 수상의 10인 벽화가 주목을 받은 것은 근·현대사에서 관계密切한 일본 내부인사의 복장선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근거는 원폭주 헌재와 미국의 대규모 공습이다. 일본에는 원폭·공습·파괴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벽화들은 있지만, 73년부대의 인체 실험 등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공식 서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일본의 역대 수상들이 침략전쟁이라고 명명해 평화기준에 따른 근본적인 이유는 보수 우



호소카와 일본 수상(왼쪽)이 구미모도현 차사 재직때인 84년 이 지역에 나무를 심으려 찾던 하루히토 전 국왕을 뒤따르고 있다. 호소카와 수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하루히토가 국왕으로서 차운 20대전이 침략전쟁을 분명히 했다. 도쿄/AP 연합

보수 우익세력 '자위' 차원 주장

주변국에 피해보상 기대 못해

의 근·현대사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인식에 따르면 일본은 악용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에서 제정리시아의 남하를 막으며 국가로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을 부두로 삼거었던 것뿐이다.

또한 태평양전쟁도 미·영 제국주의가 비핵인국으로서 일상에 오른 일본의 승리를 죄고자 일본은 그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는 대중국, 대미국, 대소련, 대동남아 있다. 기고자 품의 한사람인 이도 전이자 일본국제포럼 이사장은 호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쿄/김효순 특파원

"전후보상특위 국회내 설치" 일본학자 10명 수상에 촉구

**[도쿄=김효순 특파원]**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계하고 있는 대표적 학자들이 이리야 신야(스무기네), 와다 하루카(도쿄대), 다나카 하로시(히토쓰바시대), 다키시기 소지 교수(쓰다주쿠대) 등은 13일 오후 수상관저를 방문해 국회 결의에 의거해 전후보상문제특위의 국회내 설치를 요구하는 요망서를 호소카와 모리히로 수상에

제 전달했다.

이들은 요망서에서 특위의 일부에 대해 피해자들 국회의 불리 증언을 막고 있는 등 조사활동을 벌여 95년 8월 15일까지는 보상해야 할 피해와 고통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평양전쟁유족회 보상요구 소송의 변호단 단장인 다키시기 겐이치 변호사,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

지의 상징으로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결의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인식을 역사교육에 반영시키며 종합적 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전후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망서는 후생성이 95년 원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자 수도 평화기념관' 건설계획과 관련, 국회 결의에 따라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정부와 국민적 사업으로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겨레 '93. 8. 14]

[동아 '93. 9. 18]

## 유엔, 위안부 공식조사

인권위경의 특별보고관 임명

**[도쿄=김효순 특파원]** 유엔 인권위원회의 '소수민족 차별방지 및 보호소위원회'가 26일 일제 때 종군위안부 문제를 공식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 소수민족 차별방지 및 보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시40분(한국시간) 종군위안부 조사관 위안부 특별보고관 파견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고 특별보고관이 소위 이성위안인 미국의 킹다 카페스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치원의 공식적인 첫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일본 인권들은 제네바 소식으로 카페스 특별보고관이 국내 분장을 포함하는 전시중의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 및 노예적 행위'의 실태에 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해 94년에 풀려나고, 95년에는 최종보고관 소위에 재출하게 되었다.

특별보고관은 또 94년 끝에 열리는 유엔 인권위의 '현대노예제 실무위원회'에도 겸과를 보고한다. 카페스 특별보고관은 이날 <자지통신>과의 회견에서 "관계국 방문 조사를 희망한다"고 말해 한국 일본 등을 직접 방문해 자료수집 등 의 조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신체와 마음의 치료를 중점으로 "피해자 진체감 구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조사활동에 대해 일본군의 행위와 보스니아 해로리고비니 지역의 간혹행위가 2대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의 조사는 소위의 상

[한겨레 '93. 8. 27]

부기관인 인권위, 경제사회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쳐 인적 조성이 갖  
춰지면 94년 여름부터 본격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옛 일본군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서는 종군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징용 등 강제 노동력동원 문제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관의 보고는 인권침해의 사  
실관계, 법적 분석, 결론, 권고 등  
으로 이뤄지며, 법적 강제력을 갖  
지는 않으나 국제여론을 한기시키  
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日本軍「종군위안부」** **직접 경영**

당시 **中國파견** **日하사관** **증언**

"부대명령 **清津출장** **한국여성** 8명 '사냥'

"듯았지만 '파거' 사죄 배상청구 지원할터"

【동아=김효순 특파원】 유엔 인권위원회의 '소수민족 차별방지 및 보호소위원회'가 26일 일제 때 종군위안부 문제를 공식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 소수민족 차별방지 및 보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시40분(한국시간) 종군위안부 조사관 위안부 특별보고관 파견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고 특별보고관이 소위 이성위안인 미국의 킹다 카페스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치원의 공식적인 첫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일본 인권들은 제네바 소식으로 카페스 특별보고관이 국내 분장을 포함하는 전시중의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 및 노예적 행위'의 실태에 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해 94년에 풀려나고, 95년에는 최종보고관 소위에 재출하게 되었다.

특별보고관은 또 94년 끝에 열리는 유엔 인권위의 '현대노예제 실무위원회'에도 겸과를 보고한다. 카페스 특별보고관은 이날 <자지통신>과의 회견에서 "관계국 방문 조사를 희망한다"고 말해 한국 일본 등을 직접 방문해 자료수집 등 의 조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신체와 마음의 치료를 중점으로 "피해자 진체감 구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조사활동에 대해 일본군의 행위와 보스니아 해로리고비니 지역의 간혹행위가 2대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의 조사는 소위의 상

판권

## 정신대 자료집 IV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법적책임

펴낸 날 1993년 9월 30일

펴낸 곳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주 소 110-470 서울·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7호

☎ 763-9633/763-9634 (FAX)

찍은 곳 함께하는 기획 신명

☎ 273-6128/275-0451 (FAX)